

2026년도 제주 농촌융복합 사업안내

2026. 1.



목 차



I. 2026년 연간 사업 운영 계획	05
<hr/>	
II.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추진계획	21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22
2.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38
3.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43
4.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7
5.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8
6. 자금(융자)지원	48
7. 농촌융복합산업 포장재비 제작 지원사업	49
8.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온라인)	50
9. 제주6차산업협회	52
10.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제주)	54
<hr/>	
III. 기타자료(인증신청 관련 서류 등)	55



I. 2026년 연간 사업 운영 계획





I. 2026년 연간 사업 운영 계획 등

①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연간 운영 총괄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시기	비 고
인증 경영체 사후관리	인증심사	예비·신규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p.15
	인증 모니터링	(26. 1월 기준)196개소	연중 p.28
	역량강화 교육	예비·신규·갱신 인증설명회 및 인증 소규모그룹 컨설팅	상반기(2월) / 하반기(7월) (인증공고에 따름) p.18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대회 사례원고, 발표 컨설팅지원	3분기 p.39
	네트워크 구축	협회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운영	1분기 -
	협업화사업	협업화사업 지원	1분기 p.45
	홍보	신규·갱신 인증 현판제작	연중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현장코칭	① 유형, ② 유형, ③ 유형	2월 ~ 10월 p.30
	현장코칭 제품 고도화사업	개소 (③ 유형+사업화지원)	3월 ~ 10월 p.33
지역단위 유통플랫폼 활성화	유통품평회	(예비)인증사업자 입점 품평회 개최	2분기(제주국제박람회 연계) p.35
	판촉 지원	판촉지원 (판촉전 개최, 판촉지원)	2월 ~ 10월 p.35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	26년 7월중	p.46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 제작지원	인증사업자 내 고향사랑기부제 대상	2월 ~ 10월	p.4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강화사업	온라인 마케팅 강화사업, 해외 박람회 지원사업 등	2월 ~ 10월	p.42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사업	융자지원(2차보전) 등	전년도 하반기 모집시작 -제주시청 농정과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p.40



② 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도 식품산업과 _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체험·편의시설 지원사업(☎064-710-3133)(24년 기준)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체험·편의시설 확충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4년 4월 ~ 12월

다. 사업량 : 2개소

라. 사업비 : 75,000천원(자체재원 45,000, 자부담 30,000) * 보조율 60%

- 지원범위 : 1개소당 22,500천원 지원 * 개소당 사업비: 37,500천원(보조금 22,500, 자부담 15,000)

* 업체당 사업비는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부담 추가 가능

마. 사업내용

- 체험·편의시설 보완·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

-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등

2. 신청자격 : 공고일(1. 18.)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 감귤유통과 _ 2024년 농산물 유통시스템 개선 지원사업(문의 ☎710-3275)

▶ 식품산업과 _ 2024년 소비자 제주 농특산물 전시판매홍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문의 ☎710-3132)

▶ 식품산업과 _ 2024년 푸드테크 연계 식품산업화 사업 지원 공고(문의 ☎710-3173)

▶ 식품산업과 _ 2024년 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지원계획 공고(문의 ☎710-3172)





▶ 도 식품산업과 _ 2025년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064-710-3175)

1. 도 흥보관 참가 지원

사업명 : 제11회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 직거래박람회

기간 : 2025. 3. 20. ~ 3. 23. * 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부산 벡스코

예산액 : 14,000천원(업체당 3,500천원 내 정액지원)

사업량 : 4개 업체 내외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및 기본장치비

2.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내용 :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보조금 지원

예산액 : 11,12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보조 90%, 자부담 10%

사업량 : 4개 업체 내외

지원한도 : 14,000천원(업체당 3,500천원 내 정액지원)

지원내용 : 부스사용료 및 물품임대료, 항공료, 물류비 등

3. 신청자격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농·축산물 식품제조 가공업체로 1년 이상

운영한 업체 * 도 흥보관 참가업체는 수산물 제조가공업체도 지원 가능

신청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의 부당사용 적발 업체

도 흥보관

박람회명	기간	장소	문의처
제11회 대한민국 대표특산물 직거래 박람회	3. 20 ~ 3. 23 / 4일간	부산 벡스코	(주)한국전시산업원 (02-3785-3905)

개별박람회

박람회명	기간	장소	문의처
2025 K-웰니스 푸드 앤 투어리즘 페어	5. 14. ~ 5. 15. / 2일간	서울 aT센터	K-웰니스 시리즈 사무국 (02-3443-4030)
메가쇼 2025 시즌1	5. 15. ~ 5. 18. / 4일간	일산 킨텍스	메가쇼 사무국 (02-6677-3477)
2025 광주식품대전	5. 29. ~ 6. 1. / 4일간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식품대전 사무국 (062-611-2255)
2025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6. 10. ~ 6. 13. / 4일간	일산 킨텍스	KOTRA 사무국 (02-3460-3250)
2025 K-푸드페스타 in 서울	8. 29. ~ 8. 31. / 3일간	코엑스 마곡	푸드페스타 사무국 (02-761-2515)
2025 부산국제식품박람회	11. 20. ~ 11. 23. / 4일간	부산 벡스코	메세코리아 (051-740-7709)
기타(참가희망 박람회)	3월 ~ 11월	-	-



제주시청

식품산업분야 보조사업 사업목록

사업명	총사업비(천원)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계	보조금	자부담		
4개사업	1,055,556	750,000	305,556		
농산물가공장비 지원사업	167,000	100,000	67,000	① 농업인 ② 농업법인 ③ 협동조합	·사업량 : 10개소 내외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기계장비 지원 ·지원기준 : 10,000천원 / 개소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 사업	500,000	300,000	200,000	① 농업법인 ② 생산자단체 ③ 농촌융복합 산업 인증사업자	·사업량 : 3개소 내외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시설 구축 및 기계설비 지원 ·지원기준 : 100,000천원 / 개소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	55,556	50,000	5,556	① 농업인 ② 농업법인 ③ 생산자단체 ④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사업량 : 5개소 내외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지원기준 : 9,900천원 / 개소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333,000	300,000	33,000	① 농업인 ② 농업법인 ③ 생산자단체 ④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⑤ 농산물가공업체	·사업량 : 22개소 내외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제품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지원 ·지원기준 : 13,500천원 / 개소



▶ 농정과 _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문의 ☎728-3322)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사업량 : 10개소 내외

사업예산 : 167,0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7,000)

– 개소당 사업비 : 16,70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6,700) 이내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기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협동조합

지원내용 : 제주산 농산물 가공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건조기, 슬라이스기, 분쇄기, 포장실신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 제주시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두고 활동 또는 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② 지원요건(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영업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야 함 * 식품영업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문의

– 농산물 단순처리(절단, 증숙, 건조 등)의 경우에도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함

〈식품영업 등록 예정자 중 다음의 경우는 신청 가능, 단, 후순위자로 선정함〉

– 식품영업등록 사전 확인 절차를 완료한 자로 사업 신청 후 3개월 이내 식품영업 등록이 가능한 자*

* 영업등록 예정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 폐수배출시설, HACCP 대상 품목 여부, 시설기준 등의 사전 확인 절차를 완료한 자로 사업 기간 내
식품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③ 지원제한 대상자

– 당해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사업 신청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자

– 최근 1년간('24년) 동일 보조사업의 교부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한 자

– 최근 2년간('23 ~ '24년) 동일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자



▶ 농정과 _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사업(문의 ☎728-3322)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사업량 : 3개소 내외

사업예산 : 500,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200,000)

– 개소당 사업비 : 166,7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66,700) 이내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지원내용 : 제주산 농산물 가공 제품 생산(체험)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

* 지원제외 : 건축물 신축 비용, 차량(지게차 포함) 구입 비용, 소모성 물품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② 지원요건(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영업 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식품영업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 문의

– 농산물 단순처리(절단, 증숙, 건조 등)의 경우에도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 확보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이어야 함

③ 사업장 사전확보

– 사업장은 신청자(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제출(공증) 시 가능

–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보조시설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하여 계약서(공증)와 소유주와의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제출 시 가능

– 단, 부기등기가 필요한 사업(리모델링 등)은 반드시 신청자(법인) 명의여야 함

– (재산권 제한이 있는 경우) 채권자와의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제출 시 가능



▶ 농정과 _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사업(문의 ☎728-3322)

사업기간 : 2025. 2월 ~ 2025. 12월

사업량 : 5개소 내외

사업예산 : 55,556천원(보조 50,000, 자부담 5,556)

– 개소당 지원한도 : 보조금 4,500천원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지원대상 : 제주산 농산물 가공식품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변경,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비용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지원자격 :** 제주시에 농산물 가공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식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예비)사업자

② **지원요건(주원료 및 식품영업등록)**

- 기존 및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¹⁾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영업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주요 지원 내용 요건〉

● 기존 가공식품 포장재 변경의 경우

- 농산물 가공식품의 포장재 디자인 변경, 재활용 용이 포장재 전환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에 따른 재활용 최우수 / 우수 포장재)
- 기존 제품 디자인을 개선하는 사유가 명확하고, 기존 디자인과 변경된 디자인의 차이가 명확히 비교 가능하여야 함
 - 최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어야 함
 - 디자인 시안이 이미 기관성된 디자인은 지원 불가

● 기존 가공업체가 신제품 출시에 따른 포장재 변경의 경우

- 신규 가공 식품의 포장재 디자인 개발
- 신제품 개발이 원료된 가공 식품이어야 함
 - 최종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어야 함
 - 디자인 시안이 이미 기관성된 디자인은 지원 불가

1) **농산물 :**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로,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축산농산물, 곤충 등) 및 임산물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물은 지원 불가



▶ 농정과 _ 지역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문의 ☎728-3322)

사업기간 : 2025. 2월 ~ 2025. 12월

사업량 : 22개소 내외

사업예산 : 333,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33,000)

- 개소당 사업비 : 15,000천원(보조 13,500, 자부담 1,500) 이내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 개소당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공급가만 해당), 단,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총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지원내용 : 제주산 농산물 및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에 대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비 지원

① 지원자격 : 제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제주산 농산물 및 이를 직접 가공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② 지원요건(주원료 및 영업등록)

- 홍보하고자 하는 가공 제품의 경우 주원료2)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3)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이 원칙임

- 식품영업등록 관련 신고가 필요한 농산물 제조가공인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③ 지원제한 대상자

- 당해연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포장재 지원 사업 신청자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23~'24년) 동일 보조사업(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자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위반으로 보조금 교부 제한조치를 받은 자
- 지원받고자 하는 농산물·제품의 제조·판매 관련 법령의 영업허가* 등을 득하지 않은 자
* 「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영업허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 등

2) 주원료 : 원료 농산물의 배합비율을 기준으로 높은 순으로 결정

- 지원받고자 하는 가공제품의 원료 중 배합비율이 50% 이상인 원료가 제주산
- 특정원료 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원료와 특정원료 농산물도 주원료로 사용
(예시) 고추장 : 찹쌀 45%, 콩 15%, 고추 10% → 주원료는 찹쌀, 콩, 고추(수분함량 제외)

3) 농산물 :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로,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축산농산물, 곤충 등) 및 임산물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임산물은 지원 불가



서귀포시청

▶ 감귤농정과 _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문의 ☎760-2883)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총사업비 : 142,900천원(보조 100,000, 자부담 42,900)

- 지원비율 : 보조금 70%, 자부담 30%
- 개소당 지원한도(지원금 상한액) : 보조금 100백만원

* 지원 사업비(보조금)는 부가가치세 제외(공급가액 기준 7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사업량 : 1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 규모, 개소당 사업비는 변동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친환경(유기농, 무기농)·GAP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식품 가공업체로

서귀포시 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된 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붙임 3]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동지원 사업을 받은 법인은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친환경(유기농, 무기농)·GAP 인증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원료보관시설, 가공 및 유통 시설·장비 지원

*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감귤농정과 _ 농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문의 ☎760-2883)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사업예산 : 37,500천원(보조 22,500, 자부담 15,000)내외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개소당 지원한도(지원금 상한액) : 보조금 9백만원

* 지원 사업비(보조금)는 부가가치세 제외(공급가액 기준 6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사업량 : 3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 규모, 개소당 사업비는 변동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또는 서귀포시 내 식품제조가공업(또는 즉석판매제조업)으로 등록하고 제주산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식품 가공업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붙임 3]

지원내용 : 건조기, 슬라이스기, 포장기 등 농산물 가공 관련 기계·장비

* 단가 10만원 미만 또는 소모성 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감귤농정과 _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지원사업(문의 ☎760-2883)

사업기간 : 2025. 1 ~ 12월

총사업비 : 500백만원(보조 300, 자부담 200)

- 지원비율 : 보조금 60%, 자부담 40%
- 개소당 지원한도(지원금 상한액) : 보조금 200백만원

* 지원 사업비(보조금)는 부가가치세 제외(공급가액 기준 60% 지원, 부가세 자부담)

사업량 : 3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 규모, 개소당 사업비는 변동 가능(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서귀포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농업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식품 가공업체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업 등록에 한함)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 [붙임 3]

지원내용

- 농산물 가공(체험) 관련 시설 구축 또는 기계·장비 구입 지원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중장년내일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인재 매칭과 인건비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종합고용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 사업주지원 사업 (채용·컨설팅 지원)

- ① 중장년 신규채용지원 - 고용24 신규구인등록 인증 및 적합 인재 추천
- ② 사업주 컨설팅 - 계속고용 및 인사노무 컨설팅 무료 지원
- ③ 맞춤형 교육 - 기업신규채용자 및 재직자 역량강화 등 사업장 맞춤형 교육 지원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지원대상 : 제주지역 내 중장년(40세~64세) 채용 중소기업

지원내용 : 월 50만원 1년 지원(1인 최대 600만원)

지원요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필수
- 소정근로시간 주 35시간 이상 총족
- 2026년 최저 임금 이상 지급 등



●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퇴직 후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중장년에게 실무 기회를 제공

지원내용

- 참여자 : 월 150만원 3개월 지원(1인 최대 450만원)
- 참여기업 : 월 40만원 3개월 지원(1인 최대 120만원)

지원요건

- 참여자 : 자격 취득 또는 훈련 이수 후, 경력전환을 희망하는 50~65세 중장년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문의 ☎ 064-702-4505 /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내일센터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_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문의 ☎ 031-8084-9545)

(2024년 기준)

사업목적 :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따른 소그룹단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가능한

잠재력 있는 콘텐츠 발굴·확산

지원규모 : 40개소, 개소당 1,000만원(국비 800만원, 자부담 200만원)

– 농촌체험휴양마을 30개소 및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10개소

주요내용 : 소규모 농촌관광 콘텐츠를 가진 농촌관광 경영체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소규모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29.(금)

지원자격 상세

– '24년 1월 1일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면서, 아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대상 경영체 증빙 : ① 체험휴양마을 :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확인

② 관광농원 : 개별 사업장 매출 증빙 확인

③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 신규 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한 경영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 전체 매출액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차 매출액

–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 경영체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지정)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영체

* 반드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등록 및 사업비 집행

–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경영체 * 사업비(국비)는 자부담 확인 후 교부 가능함



경제통상진흥원

▶ 기업성장팀 _ 2024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문의 ☎710-3172)

(2024년 기준)

1. 사업개요

모집명 : 2024년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모집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5일(월) 18:00까지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본사 도내 소재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중 주된업종*이 제조업인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1항】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지원규모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규모
디자인 및 홍보물 제작	기업의 CI, BI, 포장디자인, 리플렛, 카탈로그, 영상 등 홍보물 제작 비용 지원 * 기존 홍보물 제작 지원 불가	4개社 지원 (기업별 최대 200만원)
박람회 참가 지원	국내 박람회 참가 부스 비용 지원	8개社 지원 (기업별 최대 200만원)
홍보 마케팅비 지원	라디오, 잡지, 신문광고, 온라인 SNS 광고 등 광고비용 지원	2개社 지원 (기업별 최대 100만원)

* 모집공고 신청업체 수 미달일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 수 조정될 수 있음

농업기술원

▶ 인력교육팀 _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문의 ☎760-7522)

1. 사업개요 (23년 기준)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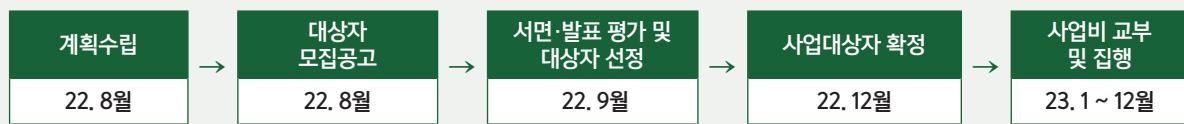
사업량 : 4개소(요구) * 2023년도 예산확정(2022년 12월) 상황에 따라 사업량은 변동 될 수 있음

사업비 : 개소당 50,000천원(보조 45,000, 자부담 5,000) * **부담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사업대상 : 사업 시행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추진절차 (23년 기준)



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_ 청년창업사관학교 (문의 ☎070-8883-15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 중소기업전략팀 _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

(문의 ☎ 02-731-7315, 7317, 7319, smla@kobaco.co.kr)

(2026년 기준)

사업목적 : 자금 및 정보의 부족으로 방송광고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및 광고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역량 강화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방송 광고 시장 선순환 발전 기반 조성

지원기업 : 소상공인 개별 사업자 114개사 내외(비수도권 83사 우선 선발)

- 2026년에 방송광고 제작 / 송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2026년 83개사는 비수도권 우선 선발, 나머지 점수순 선발

지원내용 및 대상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 지원금액 : 제작송출비의 90%(기업당 9백만원 한도)

※ 지원한도 내에서 제작비 및 송출비 비중 조절 가능(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확인서 기준 '소상공인'

※ 제외대상: 직년년도(2025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사업자

- 1대1 광고 컨설팅(114개사 전체)

송출비 지원 가능 매체 : 기업 소재지역의 방송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신청기간 : 2026. 1. 22.(목) ~ 2. 24.(화) 18:00까지 * 26년은 연 1회(1차 : 1월~2월)만 모집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www.kobaco.co.kr/smad)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제품사업설명서,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청발표 : 2026년 4월 중



▶ **중소기업전략팀** _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지원사업
(문의 ☎02-731-7314, 7320, smst@kobaco.co.kr)

(2026년 기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국가경제 활성화

지원내용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1대1 광고 컨설팅

지원금액

- TV : 전체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 라디오 : 전체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

※ 단,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자격 : 중소기업확인서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벤처 / 메인 / 이노비즈 등 유효 인증서가 있는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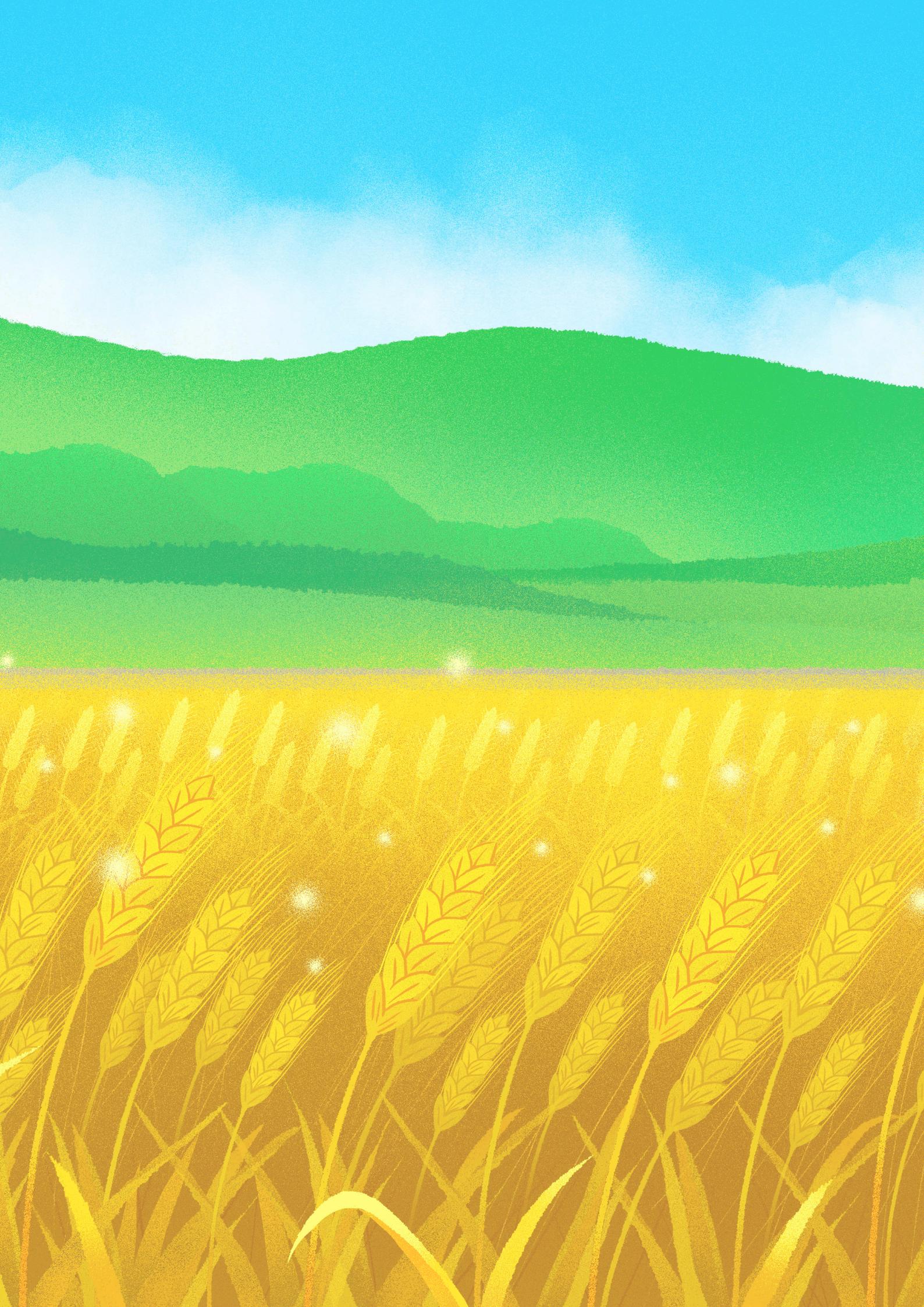
지원규모 : 중소기업 23사 선발(TV 15사, 라디오 8사)

신청기간 : 2026. 1. 22.(목) ~ 2. 23.(월) 18:00까지

신청방법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www.kobaco.co.kr/smad)

신청발표 : 2026년 3월 중





II.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추진 계획

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22
2.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38
3.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43
4.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7
5.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48
6. 자금(융자)지원	48
7. 농촌융복합산업 포장재비 제작 지원사업	49
8.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온라인)	50
9. 제주6차산업협회	52
10.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제주)	54



II.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추진 계획

①-1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26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 농촌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칭)농촌융복합산업+ 도입
- ▶ 인증 경영체 매출액에 따라 예비(인증 전 단계), 도약형(창업단계), 확장형(안정화 단계), 선도형(고도화 단계)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

- 농특산물 외의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칭)농촌융복합산업+ 도입

* 예 : 지역농산물 브랜딩 및 온라인 유통, 농촌 빈집활용 워케이션 플랫폼 운영 등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컨설팅·자금·판로 등을 지원하고, 청년·지역창업 등을 지원하는 타 부처 사업* 연계 추진 * 로컬크리에이터(중기부), 청년마을(행안부), RISE(교육부) 등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비교

구분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핵심 자원	지역산 농특산물	농촌 공간, 문화, 식생활, 경관 등 농촌 내 유무형 자원
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역 기획자·청년 등
인증 요건	사업장 입지, 주원료 지역산·국내산 농산물 사용 비중, 매출액 등	사업장 입지, 매출액
인증평가 지표	사업계획 수립 적절성, 지역 농업과 연계·활성화 기여 정도, 사업주 융복합 교육 실적 등	농촌 지역자원 연계성·활용도, 지역기여도, 지속 가능성 등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인증 경영체의 성장단계를 매출액에 따라 예비(인증 전 단계), 도약형(창업단계), 확장형(안정화 단계), 선도형(고도화 단계)으로 구분



농촌융복합산업 성장단계 구분(안)				
구분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매출액	5년 평균 농가소득 (‘26년 48백만원) 미만	5년 평균 농가소득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요 분야별 지원 내용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

- (예비인증) 농촌융복합산업 본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중점 지원
- (도약형) 창업 아이템 제품화 및 사업모델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 시제품 생산, 판로 개척
(안테나숍 입점·팝업 행사 등 기획 입점) 중심 지원
- (확장형) 유통·판매처 확대를 위한 상시 판로 확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자금 융자, 제품 다양화를 위한 컨설팅 등 중심 지원
- (선도형) 사업 분야 다각화,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컨설팅, 시설·설비 확충 및 경영 확대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등

성장단계별 주요 분야별 지원내용(안)			
분야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컨설팅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제품화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제품 다각화	사업 분야 다각화, 수출 유통망 구축 컨설팅 등
홍보· 마케팅	우수사례 발굴·홍보	국내 박람회 참여, SNS 마케팅 지원	팸투어, 수출 박람회 참여 지원
판로	안테나숍, 팝업 행사 등 기획 입점 지원	온라인 플랫폼·로컬푸드직매장 백화점 등 상시 입점 지원	수출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 (제주국제박람회 등)
자금 투자	초기 시설 설비 자금 융자	· 모태펀드 등 정책자금 투자 · 시설 설비 확대 자금 융자	VC·대기업 연계 민간투자 유치 지원



①-2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도 운영

● 개요

⇒ **목적**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인증사업자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로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6. 3) 및 시행('15. 6. 4)

⇒ **주체** 11개 시·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위탁

⇒ **현황** '25년 말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2,725개소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2,725	257	268	196	278	432	432	304	285	184	44	45

* 인증사업자 수(누적) : ('15)802개소 → ('23)2,396 → ('24)2,525 → ('25)2,725

⇒ **신규 도입**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가칭)농촌융복합산업+ 도입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 (현재)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 → (개선)유휴시설·식문화 등 다양한 농촌자원 활용 경제활동까지 포함

(예 : 농촌 유휴시설 활용 체험·휴양 프로그램 등 제공, 식문화체험, 지역농산물 브랜딩 등)

● 추진 절차

⇒ **절차** 인증심사(신규, 갱신)는 수시로 실시(분기 1회 이상)하되,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의 인력, 업무 협력 등을 감안하여 추진



* 특히, 융복합+는 서류심사 전 시·도 지원센터에서 업종, 사업형태 등을 확인하여 접수

① 인증 신청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인증 신청서(신규, 갱신)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신청

* 인증·갱신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 또는 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경영 상태 확인 서류, 일자리 및 지역 농산물 등 증빙서류

- 해당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는 사전에 자격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충족된 경영체에 한정하여 신청 접수



●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추진 절차 (* 상황에 따라 일정 등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신규

진행		① 예비·신규 인증 안내	② 컨설팅지원	③ 인증 접수	④ 서면·현장실사	⑤ 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일정	1차 (상반기)		2. 2.(월) ~ 3. 31.(화) (접수마감 3. 31.(화) 16:00)		4. 13.(월) ~ 4. 17.(금)	5월 ~ 6월
	2차 (하반기)		7. 1.(월) ~ 9. 30.(수) (접수마감 9. 30.(수) 16:00)		10. 12.(월) ~ 10. 16.(금)	11월 ~ 12월
내용	예비·신규 절차·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	예비·신규 인증 관련 컨설팅 2회 (무료)	인증 심사비 * 자부담입금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현장실사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 간신

진행		① 인증 간신대상	② 간신상담 및 준비	③ 인증 접수	④ 서면·현장실사	⑤ 적격심사 및 인증 공고
일정	8월 ~ 9월 만료 (28개소)		1월 ~ 4월	5. 6.(수) 16:00	5. 11.(월) ~ 5. 15.(금)	6월 ~ 7월
	10월 ~ 1월 만료 (23개소)	→	1월 ~ 6월	7. 1.(수) 16:00	8. 3.(월) ~ 8. 7.(금)	9월 ~ 10월
내용	26년도 인증 간신대상 51개소		간신 절차· 접수·심사 기준 등 안내	인증 심사비 * 자부담입금	접수 경영체 대상 서면· 현장실사	70점 이상 경영체 적격심사 및 최종 인증 공고



농촌융복합산업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요건

구 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사업장 입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소재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융복합산업(①유형) :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 가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 단, 주원료의 품목 특성 상 지배지역이 한정된 경우 시·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빙(「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시, 지역산 의무 사용비율(50%) 적용 예외 가능 * 농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공품 내 지역산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증빙 시, 인정 가능 ·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생산품 품목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주 생산품 변경 시 사업자 인증 변경 신청 필요(재인증 시 인증마크 부착 사진 증빙) · 농촌융복합산업(②유형) : 1차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융복합산업 / (2차), (3차), (2차×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 ① 공간 재생형, ② 미식 연계형, ③ 체류 서비스형, ④ 농촌 창업 지원형 등 (향후 신유형 발굴·조사 등을 거쳐 유형 지속 추가·보완)
사업성과	<p>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8백만원' 이상</p> <p>* 산출 근거 : ('20)45,029천원, ('21)47,759, ('22)46,153, ('23)50,828, ('24)50,5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기 타	<p>서면 및 현장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4대보험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26년 신설	매출 규모에 따라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으로 구분(현장 검증 등 필수)				
	구분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매출액*					
5년 평균 농가소득 (‘26년 48백만원) 미만		5년 평균 농가소득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향후 외부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운영의 형태 1차(원물), 2차(제조·가공), 유통판매, 3차 체험·관광 서비스 / 농촌융복합산업+ 등 해당 경영체는 붙임18~20 자료 작성 및 제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위한 자격 요건 관련 증빙서류

구 분	세부내용
대상주체	대상주체 여부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택 1	<p>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증명서(농산물품질관리원)</p> <p>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p> <p>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p> <p>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p> <p>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p> <p>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p>
정관(법인) 또는 운영규정	<p>★농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p> <p>→ 정관(법인의 경우)</p> <p>→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p> <p>「농업 관련」</p> <p>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내 「농업 관련」증빙 확인을 위해 「농업 관련」내용의 경영체 정관 설립 목적 또는 사업내용 확인</p> <p>2) 법인이 아닌 경우(단체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확인</p> <p>3) 법인과 단체 등 아닌, 개인의 경우 농업인만 신청가능하며 농업경영체증명서 확인</p>



구분	세부내용
사업장 입지	<p>농촌지역 입지여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p> <p>가. 읍·면의 지역</p> <p>나. 가로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고시하는”(다음페이지))</p>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 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기준

사업장 농촌지역 입지 기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① 사업자등록증 내 도로명 주소로 확인

② 「토지e음」도로명 주소 검색 ▶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07-10호)

1. 농어촌지역 지정지역 : 대상지역(법정동, 통)내 주거지역

2. 대상지역

● 법정동 기준

구분	법정동	지정대상지역
제주시	19	도남동, 용담2·3동, 화북1·2동, 삼양1동, 도련1·2동, 봉개동, 아리1·2동, 오라1·2동, 연동, 노형동, 외도1·2동, 이호2동, 도두1동
서귀포시	20	보목동, 신호동, 하호동, 상호동, 토평동, 동홍동, 서홍동, 법화동, 서호동, 호근동, 강정동, 도순동, 월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 주거지역이 없는 13개동은 농림부 고시에 의해 기 지정

· 제주시(12개동) : 삼양3동, 회천동, 용강동, 월평동, 영평동, 오등동, 오라3동, 해안동, 내도동, 도평동, 이호1동, 도두2동

· 서귀포시(1개동) : 영남동

● 통단위 기준

구분	통수	지정대상지역
제주시	4	이도2동(49통), 건입동(18통), 삼양동(5·13통)
서귀포시	1	송산동(1통)



구 분	세부내용
형태 및 주재료 지역비율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융복합형태 여부 (1차×2차), (1차×3차), (1차×2차×3차)·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 가능 여부<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원료는 자가생산, 계약재배, 지역매입을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국산)을 사용하고,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으로 하되, 다른 시·도와 접해있는 시·군의 경우 인접 시·군도 동일지역으로 간주<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매입을 통해 조달하는 경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 계산서 등 증빙 확인* 단, 주원료의 품목 특성 상 지배지역이 한정된 경우 시·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빙 (『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시, 지역산 의무 사용비율(50%) 적용 예외 가능* 농산물을 활용한 1차 가공품(과일농축액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공품 내 지역산 농산물이 50% 이상 사용되었음을 증빙 시, 인정 가능·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생산품 품목 기재<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원료 사용 관련 증빙이 가능한 제품만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주 생산품 변경 시 사업자 인증 변경 신청 필요증 변경 신청 필요 (재인증 시 인증마크 부착 사진 증빙)· 농촌융복합산업(②유형) : 1차산업을 포함하지 않은 융복합산업 / (2차), (3차), (2차×3차)<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의 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 ① 공간 재생형, ② 미식 연계형, ③ 체류 서비스형, ④ 농촌 창업 지원형 등 (향후 신유형 발굴·조사 등을 거쳐 유형 지속 추가·보완)

인증표시가 가능한 주원료 품목 기재 ▶ 사업계획서 내 “주생산품” 란에 작성

자가생산 (25년 기준)	① 자가생산증명서 ②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등 ③ 농지 사진 등
계약재배 (25년 기준)	①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 ② 농산물 원산지증명(원산지증명 or 농업인경영체확인서 or 농지대장 등) ③ 거래내역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입증명 (25년 기준)	① 매입증명서 ② 농산물 원산지증명(원산지 증명 or 농업인경영체확인서 or 농지대장 등) ③ 거래내역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등)
농촌융복합산업+ (②유형)	신설유형에 부합되는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농산물 원산지증명(25년 기준) 필요시, 농산물품질관리원 양식 사용

(필요시) 시·도 내 조달이 불가능함을 증빙(『농작물 생산조사(통계청)』 결과 등)



구 분	세부내용
사업성과	<p>최근 2년간 사업성과(매출액)가 있고, 평균 매출액이 '최근 5개년 평균 농가소득 46백만원' 이상</p> <p>* 산출 근거 : ('19)41,182, ('20)45,029, ('21)47,759, ('22)46,153, ('23)50,828</p> <p>- 매출액은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증빙가능한 서류로 산정</p> <p>*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성과(매출액)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p>

· 국세청 신고된 매출증빙자료(3년, 2025년·2024년·2023년) 제출

- ①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재무제표 모두 제출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인 경우, 존재한다면 추후 필히 제출**
- ②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 제출
- ③ 과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증 제출
- ④ 겸업사업자의 경우, 겸업사업자수입증명원 제출

· 불인정 » 통장내역, 농협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이지 못한 증빙자료

구 분	세부내용
기타	<p>서면 및 현장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증빙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3년, 25년·24년·23년), 신고서류, 일용직 신고서, 임시근로자 근무확인서 등 확인 - (지역농산물) 자가생산 증명서, 계약재배 협약서, 매매계약서 등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인증기간 동안 원활한 사업 운영 가능 여부 확인 - (교육 이수증)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가점) 가점 해당 관련 증빙자료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 근로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3년, 25년·24년·23년), *사업계획서 작성일 기준 *상시(유급) 근로자 :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함 · 임시 근로자 → 임시근로자 근로확인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 (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 =1.3명)0시간=1.3명)
건축물 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법인 또는 이사 등 관계자와 별개인 경우 반드시 포함하며 임대 기간이 인증기간(3년)의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해야 함
교육 이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이수증 기간 2025년, 2024년, 2023년 이내에 수료만 인정 · 대표자의 수료증 인정(또는 법인 내 등기이사 인정) · 직원, 조합원, 투자자 등 수료증 불인정



② **인증 심사** 지원센터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현장 심사 실시

구 분	신 규	갱 신
심사비	20만원	10만원
심사위원회 구성	외부 전문가 2인을 심사위원회로 구성, 서류·현장 심사를 동시 진행	외부 심사위원 1~2인과 지원센터 1인을 심사위원회로 구성하여 진행 * 주원료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현장 심사를 모니터링 등으로 갈음 가능

③ **자부담 납입** 신청자는 자부담액을 해당 지원센터 통장계좌에 입금, 납부 시 별도 협약(양도 동의서) 없이 지원센터에 비용 지급권 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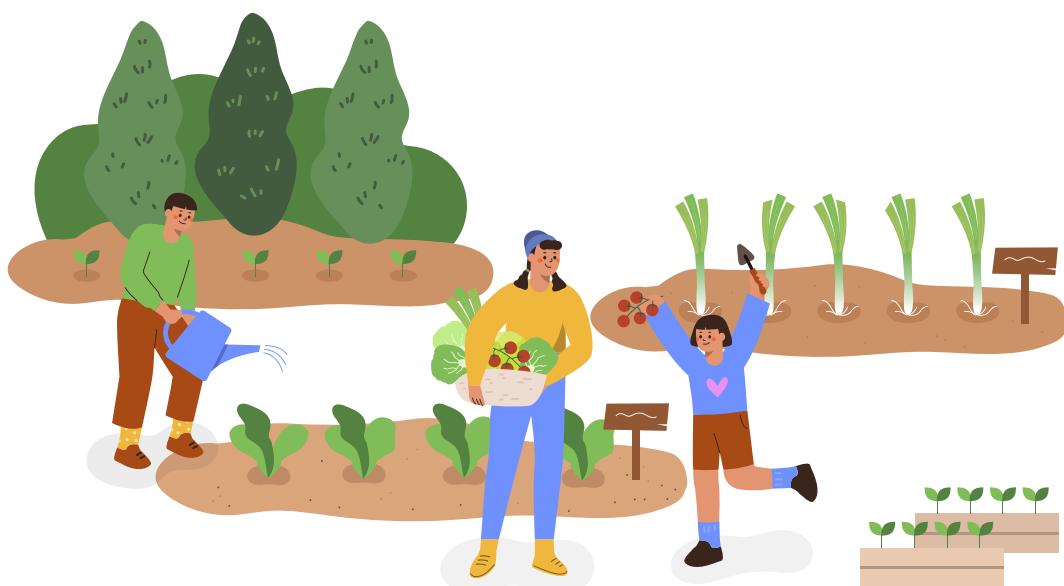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기준	배점
농촌융복합 산업기반 (40)	(기초 역량) 사업주의 최근 3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실적 ※ (증빙)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및 위탁 교육의 이수증, 수료확인서 등 * 예 : 농업교육포털 내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과정	10
	(경영 및 재무관리)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기본 인프라)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지역 농산물) 주원료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전년도 기준)	10
경쟁력 (20)	사업 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과의 연계 및 활용도	10
지역사회 연계 · 상생 (20)	지역농업과의 연계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정도	10
향후 계획 (20)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가점 (8)	· (신규) 예비 인증(2), 청년(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계	108점	



‘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심사 기준 [농촌융복합산업+]

신규(갱신) 기준		배점
농촌융복합 산업기반 (30)	(경영 및 재무관리)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5
	(기본 인프라)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경쟁력 (20)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도	10
	제품·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과의 연계 여부 및 활용도, 확장성, 품질 정도	10
지역사회 연계 · 상생 (30)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직)와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10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10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농가 수익·지역 기여 등	10
향후 계획 (20)	사업계획 수립의 적절성 및 목표 달성 가능 정도	10
	2차, 3차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농촌융복합산업 완성도 및 타 융복합산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정도	10
가점 (10)	· (신규) 청년(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2),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입상 실적(3)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계	110점	

*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사업신청서는 법정양식(농촌융복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사용하되, 작성 가능 내용만 기재(향후, 신규 양식 신설 예정)





가점 부여 기준

	평가항목	신규(갱신) 기준	배점
신 규	예비인증자 (2)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2
	청년 (2)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 (1)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척도) 실적 있음(1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창업 관련 입상 또는 선정 실적 (3)	(기준) 최근 3년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입상 실적 (척도) 대상(1위) (3점), 최우수상(2위) (2점), 우수상 등(3위 이하)(1점) (증빙) 상장 사본, 표창 발급내역서 등	3
가 점 갱 신	사회공헌 (2)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기부활동 등 (척도)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증빙) 기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	2
	자연친화적 경영(2)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자연친화적 경영 (척도) 실적 있음(2점), 실적 없음(0점) (증빙) 농축산물의 친환경 인증, 자연친화적 포장재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	2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 (1)	(기준) 최근 2년간(신청년도 포함) 농산물 가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 개발 및 특허 출원(상표등록 제외) (척도) 실적 있음(1점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정부기관(지자체 포함)에서 발급하는 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증, 품목제조보고서 등	1
	중기부 사업자 선정(3)	(기준) 최근 3년간 중기부 사업 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브랜드 창출, ③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④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자 선정 (척도) 실적 있음(3점), 실적 없음(0점) (증빙) 소상공인 24(www.sbiz24.kr)에서 확인서 출력	3



④ 1차 심사 결과 제출 및 추천

지원센터는 인증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영체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법」제12조 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신청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이 취소(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⑤ 최종 심사 및 적격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 분기별 (2·4·6·9·11월) 시·도별 추천된 경영체의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적격자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심사위원회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2~3인으로 구성하되, 신설 유형의 경우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일괄 심사 예정

⑥ 인증서 발급 및 통지

농식품부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여 인증(갱신)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인증(갱신) 여부 통지 및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발급

● 인증 갱신 및 유지

⇒ 유효기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갱신 시 이전 인증 만료일 익일부터 3년 연장

⇒ 갱신 신청 경영체가 인증 기간 만료 후 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갱신 신청

* 지원센터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갱신 절차를 통보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모니터링 실시

- 지원센터는 대상 경영체에게 갱신 미신청 또는 탈락 시 인증만료일로부터 1년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규 신청이 불가능함을 안내

⇒ 갱신 탈락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갱신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 회수 및 인증표시 부착 포장지 파기 등 적의 조치

- 지원센터는 탈락 경영체를 즉시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시·군·구에 알려 미인증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사업(카페, 휴게음식점 등) 정지 등 사후 조치
- 시·도는 갱신 탈락 경영체를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하여 법인의 사업 내용 변경 등 경영체 등록 변경 등 시정 조치 요청



⇒ **사업계획 변경** 주원료 품목의 전체 변경 등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신규 인증 신청이 필요하며,

- 주원료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서, 원물 구매내역서 등 서류를 센터에 제출, 시·도 심의를 거쳐 농어촌공사에 제출하고 인증서 재발급
- 주원료가 삭제되는 경우에도 지원센터로 반드시 내용 변경 신청, 센터에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인증서 재발급

* 지원센터는 변경인증 경영체 내역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사업계획 변경시 자부담금 납부

※ (사업계획 변경) 공동대표 정정, 사업자번호 변경 등 단순한 내용변경 사항(갱신) 사업장 주소 이전 등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갱신 절차 적용

⇒ **승계** 인증 유효기간 내 승계 사유 발생 시 1개월 내 지원센터로 신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인증 갱신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은 승계 및 재발급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농식품부에 대상자 공문을 송부하고, 농식품부는 검토 후 변경된 인증서 발급

⇒ **인증 취소** 「농촌융복합산업법」제14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 또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인증을 받은 경우 또는 1년간 사업 중단, 계획과 다른 사업수행, 사업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 인증 취소

* 인증사업자의 부도·폐업·파산·관리부실 등의 사유로 사업 계획 상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점검 사진 등)를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에 공문 송부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 **사후관리** 인증사업자의 갱신, 취소 등으로 기존 인증서가 변경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지원센터는 인증서를 즉시 회수 조치하고 인증 번호, 담당자, 일시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별도 관리

-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원센터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

* 매년 1회 이상 농식품부,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지원센터 등 합동 점검 실시

주요 점검 내용

주원료 사용 위반

주원료 사용 비율(국산 100%, 지역산 50% 이상)은 원산지 단속정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 등을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확인하고 위반 시 인증 취소 및 인증신청 제한(3년간) 등 조치

인증 표시 등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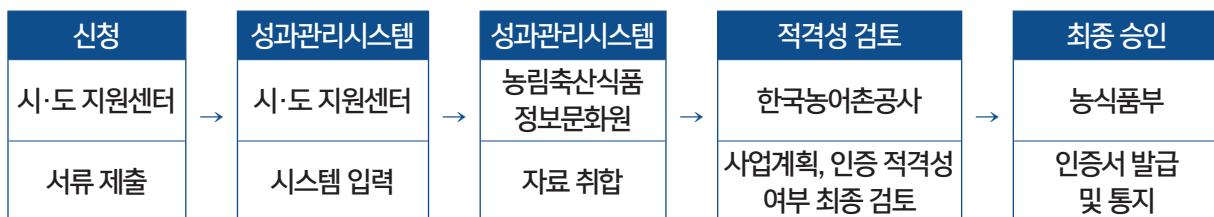
인증사업자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주원료로 만든 제품 외 인증 표시(마크) 등을 사용하거나 인증에서 탈락하였음에도 인증표시를 사용할 경우, 계도 기간(3개월)을 부여하고 미 이행시 지자체는 관련기관에 고발 조치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내용변경 관련 추진절차

● 기존 내용변경 추진현황

- ⇒ 내용변경 세부사항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융복합유형 등 사업계획변경 및 승계 등의 변경사항
- ⇒ 추진절차 인증 유효기간(3년) 내에 내용변경 사항에 대해 수시 접수를 받아 심사과정 없이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 확인 후 내용변경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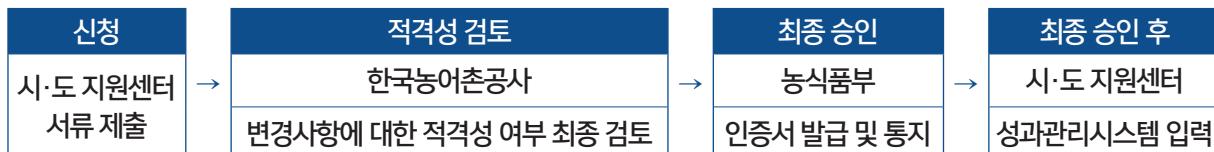


● '26년 내용변경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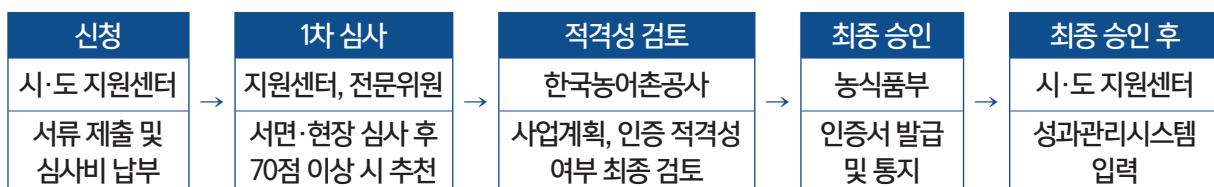
- ⇒ 법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 (사업계획변경)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과 구분하기 위해 이 경우는 '사업계획변경'이라 하며,
아래 2가지 경우로 구별하여 추진함

- ① (단순변경사항) 사업자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등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갱신 절차를 준용하여 절차를 진행하되 별도 심사는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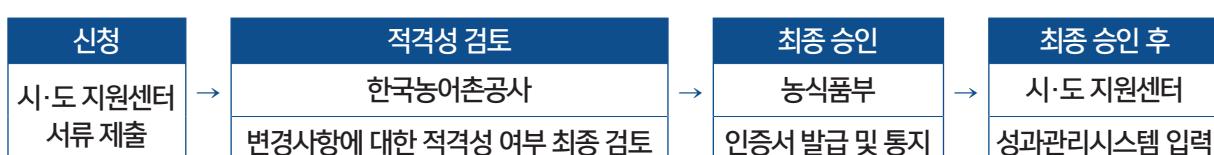


- ② (내용변경사항) 주소, 사업내용추가, 융복합 유형추가 등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새롭게 인증 신청(신규인증)
- 심사비 20만원 자부담, 기존 인증번호 취소후 신규 인증번호 부여



● 제13조(인증의 승계 등)에 따른 인증사항 변경

인증내용(사업)에 대해 상속, 양수, 합병의 사유로 인증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①-3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제도 운영

● 제도 개요

-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예비 인증제를 확대하여 인증제도 확산 및 내실화 도모
- ➔ **요건** 융복합을 영위하는 경영체 중 매출액 기준 외 사업자 인증을 위한 기본 자격*을 충족하는 경영체에게 예비인증자격 부여 * 대상주체(농업인·농업법인 등), 사업장 입지(농촌 소재) 등
- ➔ **예비인증 심사** 지원센터는 요건을 충족하는 미 인증 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의(자체 가능) 과정을 거친 후 예비인증자 선정
- ➔ **심사 결과 제출** 지원센터는 예비인증심사 결과를 시·도, 시·도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에 제출
- ➔ **예비인증여부 통지** 한국농어촌공사는 최종 적격자를 확인하고, 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는 예비인증일 지정, 시·도 및 지원센터에 예비인증 여부 통지
* 예비사업자 인증서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발급 가능
- ➔ **지원 혜택** 농촌융복합산업 본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중점 지원, 본 인증심사 시 가점(2점) 부여 등
- ➔ **인증 기간 3년, 갱신 없음** * 기 승인된 예비인증자 신규 갱신 불가, 갱신 기간 1년 연장(2년 → 3년)





②-1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에 종사하는 인증사업자(예비 포함)의 역량 강화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 단계별 컨설팅 : (예비인증) 매출증가 등 본 인증 획득 위주, (도약형) 제품화 및 사업 안정화, (확장형) 제품 다양화 등, (선도형) 사업분야 다각화, 해외시장 개척 등

- **주체**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국비 37.5%, 지방비 37.5%, 자부담 25%)

- **현황** 경영, 마케팅, 재무 등 분야별 전문가를 농촌융복합산업 현장코칭 전문위원으로 위촉

* 지역 특성에 맞게 전문위원 선정·관리의 주체를 시·도 지원센터로 변경

<‘25년 컨설팅 전문위원 현황>

구 분	합 계	경 영							기 技				기 타	
		경영 전략	마케팅 / 디자인 / 홍보	재무 / 생산성 향상	지적 재산권 / 법률	농촌 관광	수출	민간 투자	제품개발 / 가공기술	공장 신·증축	품질관리 / 법규준수 / 위생관리 / 공정개선	ICT	음식 개발	
계	346	71	88	24	10	35	15	1	31	8	32	11	15	5
신규위원	55	14	15	7	1	3	1	1	4	1	5	-	2	1
재임위원	291	57	73	17	9	32	14	-	27	7	27	11	13	4

<‘25년 컨설팅 전문위원 지역별 현황>

구 分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계	346	44	41	21	32	55	57	17	39	31	4	5
신규위원	55	5	6	4	6	9	6	6	7	4	1	1
재임위원	291	39	35	17	26	46	51	11	32	27	3	4

전문 상담 및 코칭 현황 실적

구 分	합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컨설팅수	24,470	2,080	2,346	2,485	2,929	3,154	2,924	3,310	2,541	2,701
수혜 경영체	7,777	723	781	845	921	984	931	1,002	776	814
전문위원	32,247	312	367	391	412	422	298	313	257	231

●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세부 내용

- ➔ 지원센터는 경영체의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성장단계 및 상담목적을 파악하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전문위원을 매칭 – 경영체의 성장단계별(예비, 도약, 확장, 선도) 특성에 맞는 코칭 지원



〈성장단계별 분야별 현장코칭 내용(안)〉

분야	예비인증	도약형	확장형	선도형
경영전략 재무 등	본인증 획득을 위한 계획수립	초기기업 정책사업(자금) 확보 등을 위한 계획수립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제품 다각화	사업 분야 다각화
제품개발 공장 신·증축 등	-	신규 아이템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역 연구기관 협업 제품 다양화	농식품 R&D 등 제품 고도화 공장 증축 등
홍보· 마케팅 등	스마트 스토어 등 자체 판로구축 등	기업 및 제품홍보를 위한 홍보계획	온라인 플랫폼, 백화점 등 입점 컨설팅	수출 유통망 구축 컨설팅
지적재산권 등	-		특허, 실용신안, HACCP인증 등 지적재산권	

〈경영체별 지원조건, 자부담 기준〉

구분	주요내용	기간 및 비용
유형 ① (일반 코칭)	분야별 전문가 코칭을 통한 애로사항 해소목적으로 최대 6건까지 지원	경영체당 1건당 40만원(자부담 10만원) (건당 최소 2회 이상 또는 4시간 이상, 최대 6건, 240만원)
유형 ② (제품 컨설팅)	온·오프라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유통업체에 입점한 제품 이외의 제품 입점을 전제로 품질관리, 포장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코칭	경영체당 1건 240만원(자부담 60만원) (최대 2건, 480만원)
유형 ③ (보육 매니저)	경영진단, 사업계획 수립,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상시 모니터링·컨설팅	경영체당 1개월 80만원(자부담 20만원) (최대 12개월, 960만원, 월 2회 8시간 이상 방문 등을 통한 컨설팅)

▶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 및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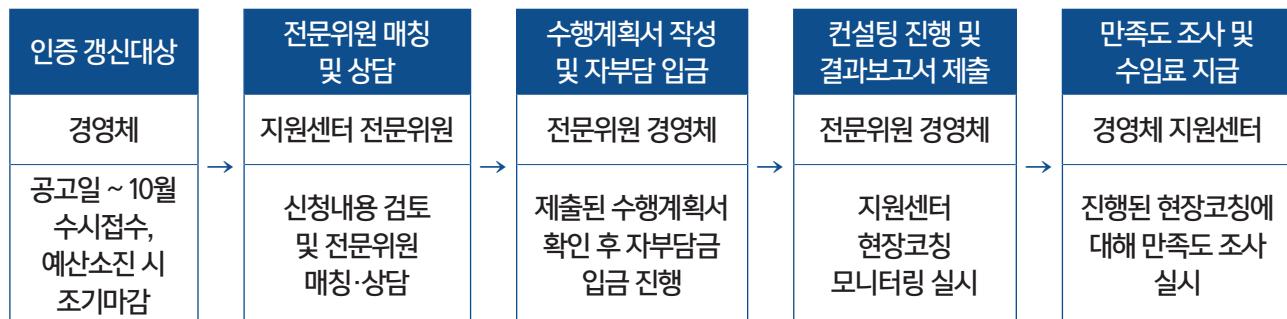
*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미인증사업자)의 경우 유형①에 한함

** 농업인 및 농업관련 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등록을 하여야 함

*** 창업단계 경영체에 대한 현장코칭 지원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상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중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조항 예외 적용

▶ 지원 제외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갱신 미신청 또는 탈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 추진절차





● 컨설팅 매칭 (상세문의 : ☎064-722-7916)

⇒ 접수 www.제주6차센터.com 홈페이지 상단 현장코칭-지원신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애로사항 등을 유선 또는 현장 방문하여 상담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 선정 공문(미인증사업자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매칭 및 통보 코칭 분야 및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한 전문위원 또는 보육매니저 또는 전문위원을 배정, 신청인의 수락 후 컨설팅 진행

⇒ 금액 납입 신청자는 유형별 자부담 금액(총 비용의 25%)을 해당 지원센터 통장계좌*에 입금하며, 납입**은 별도의 협약서(양도 동의서)없이 협약한 것으로 갈음

* 지원센터 명의의 별도계좌 개설 후 자부담 입금 계좌로 활용,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 지원사업 수익금'으로 처리하되 자부담금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므로 부가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되지 않음

** 컨설팅을 받는 경영체는 지원센터에 상담 및 현장 코칭사업 참여에 따른 비용 지급권 양도

● 컨설팅 수행

⇒ 계획서 접수 지원센터는 신청 및 상담내용 등을 전문위원에게 제공하고 전문위원은 현장코칭 수행 (보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와 신청인에게 제출

* 수행계획서는 방문시기, 코칭분야·범위 등에 대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작성하며, 지원센터에 제출 시 일종의 협약으로 간주

⇒ 수행 유형별 세부 매뉴얼에 맞게 전문가 상담 및 현장 코칭 진행

⇒ 결과 보고서 제출 전문위원은 상담 및 코칭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보육매니저는 활동실적을 월 1회 지원센터와 경영체 제출

* 수행결과 보고서 추가내용 보완 필요시 1회에 한해서 지원센터 협의 하에 기간 연장 가능

※ 기한 미준수 시 사전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가능

●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 보고

⇒ 정산 전문상담 및 현장코칭이 완료되면 수행 결과의 적정성, 경영체의 만족도 등을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점검하고 수임료 지급

* 신청인이 납부한 자부담을 포함한 총 비용으로 전문위원의 수행(보육)계획서,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따른 별도 수임료는 없음

⇒ 모니터링 각 시·도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연 1회 이상)하고 컨설팅 중 부정, 도덕적 해이, 불성실 방지 등을 위해 노력 * 시·도는 신청 접수, 상담 및 전문가 매칭 절차, 자금집행의 적정성, 사업성과 등 점검

⇒ 사후관리 지원센터는 수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표를 관리하고, 농어촌공사는 전문위원 중 우수위원(전체 활동 위원의 약 10%) 공개 및 우수위원을 심의하여 장관 표창(상장) 수여



②-2 현장코칭 제품고도화 사업

● 현장코칭 연계 고도화 지원사업

⇒ **목적** 제품개발·개선 등을 통한 제품의 인지도 제고, 현장코칭을 연계하여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한 상품 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 **대상** 제주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제품 개발·개선 등 비용 경영체별 최대 5,000천원

⇒ **추진절차** * 일정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진행	① 모집기간	② 평가 및 선정	③ 현장코칭 신청 및 자부담금 입금	④ 사업수행	⑤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지급
시기	3월	3월 ~ 4월	4월	5월 ~ 9월	10월
역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지원센터 서면심사	전문위원 매칭 후 현장코칭 신청 및 자부담 입금 진행	사업수행기간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5년 추진실적

- 현장코칭 3유형 4개월(2,400천원 + 자부담 800천원) + 고도화사업(5,000천원) 5개소 지원
- 현장코칭 1유형 4건(1,600천원 + 자부담 400천원) + 고도화사업(5,000천원) 3개소 지원



제주샘 '애원283 세트 패키지'



성지 '자사물 및 영상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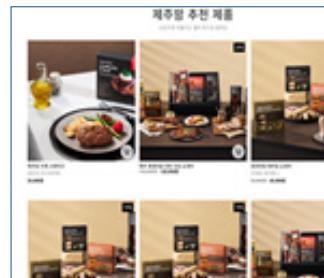


굿잡제주 '체험키트 및 체험 프로그램'

울드련마씸 '염색 체험프로그램 및 체험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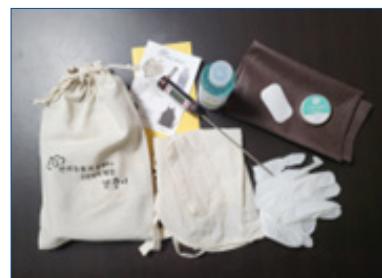
유오라캠프 '봉주스 포장디자인 개발'



평화의마을 '자사물 리뉴얼 및 유튜브 영상제작'



하효살롱 '건나물 포장디자인 및 오메기떡 체험키트'



갈중이 '반려견 의류 염색 체험키트'



③ 지역 및 중앙단위 판로·마케팅

1 지역단위 판로·마케팅 활성화

- **목적** 농촌융복합 인증제품에 대한 소비자 반응 테스트를 통해 개선 방안 도출, 대형 판매 플랫폼

입점을 위한 교두보 역할 수행

- **주체**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위탁 수행(국비 50%, 지방비 50%)

⇒ **안테나숍** 소비자 반응 및 성향을 파악하고, 제품 기획 및 생산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일종의 테스트 공간이자 마케팅 거점 운영

* 안테나숍 현황 : ('16)28개소 → ('18)35 → ('20)48 → ('22)73 → ('24)94 → ('25)104

⇒ **판매 플랫폼** 지역축제 내 장터운영 등 기획전 개최를 통한 판매 활성화

* 플랫폼 운영 실적 : ('16)90건 → ('18)123 → ('20)158 → ('22)342 → ('24)330 → ('25)285

< '25년도 안테나숍 및 플랫폼 운영 현황 >

구 분	총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인천
안테나숍	104	9	11	6	27	18	4	9	5	10	5	-
판매플랫폼	285	51	30	69	18	20	8	3	62	14	4	6

- (제주 안테나숍 10개소 운영)

연번	지점명	구축일자	주소
1	이마트 제주점	2015. 4. 30.	제주 제주시 탑동로 38
2	이마트 신제주점	2015. 4. 30.	제주 제주시 1100로 3348
3	이마트 서귀포점	2015. 4. 30.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9209
4	이마트 서울 목동점	2015. 12. 8.	서울 양천구 오목로 299
5	이마트 서울 용산점	2016. 6. 1.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6	제주드림타워점	2021. 10. 22.	제주 제주시 노연로 12, 제주드림타워 3층
7	제주에이바우트 스타디움점	2023. 3. 7.	제주 제주시 거로남4길 57-15
8	동화마을 제스코관광마트	2024. 5. 1.	제주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1191
9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2025. 1. 1.	제주 제주시 조천읍 조천우회로 325
10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2023. 7. 3.	(온라인) https://www.tamnao.com/web/sv/sixIntro.do



이마트 제주점



이마트 신제주점



이마트 서귀포점



이마트 서울 목동점



이마트 서울 용산점



제주드림타워점



제주에이바우트 스타디움점



동화마을 제스코관광마트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 세부 추진 내용 ※ 입점 경영체 심사 시 간접 인증 사업자 가점 부여

- (방향) 지역별 시장규모, 판매장 입지, 고용 가능인력 등을 감안하여 자체상황에 따라 안테나숍과 판매 플랫폼 비율 조정 및 사업계획 수립
- (운영) 온오프라인 형태, 고용인원, 품목 제한 등은 없으나 안테나숍·판매플랫폼 중 경쟁력 있는 지원 형태를 선택하여 1종류 이상 필수 추진
- (연계지원) 제품 개선을 위해 현장코칭 지원사업과 연계 가능하며, 소비자 반응 및 선호도가 높은 제품은 중앙협업 판로지원 사업에 우선 추진

〈추진 절차〉

진행	① 위탁기관 선정	② 제품선정	③ 판매진행	④ 사업결과 분석 및 정산보고
추진 기관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농촌융복합 산업지원센터	위탁기관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역할	위탁 또는 사업자 선정 공모 진행	지역품평회 개최 등 제품 선정	인테리어 구성 및 제품 홍보	수행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 판촉지원 (25년 기준, 판촉지원 14건, 판촉전 개최·지원 14건(250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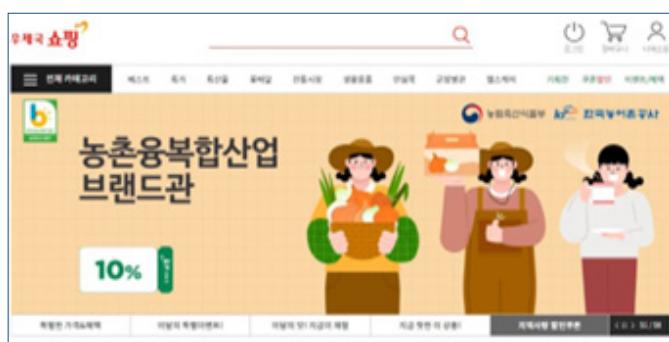
구분	연번	내용	기간	참여기업
판 촉 지 원	1	현대백화점 협업 2025 제주 IN 서울	2. 28.(금) ~ 3. 12.(수)	4
	2	2025 제주카페스타	3. 6.(목) ~ 3. 9.(일)	7
	3	2025 제주잇수다	2. 28.(금) ~ 3. 2.(일)	3
	4	2025 부산국제식품박람회	4. 24.(목) ~ 4. 27.(일)	1
	5	서귀포우체국 창구전시판매 판촉지원	4월말 ~ 계속	2
	6	2025 카페디저트페어	5. 8.(목) ~ 5. 11.(일)	1
	7	2025 메가쇼 시즌1	5. 15.(목) ~ 5. 18.(일)	1
	8	2025 부산 차·공예 박람회	6. 19.(목) ~ 6. 22.(일)	1
	9	[중앙단위] 메가쇼 팔도밥상페어(2개소)	7. 3.(목) ~ 7. 6.(일)	2
	10	수출 라이브커머스(대만)*	7. 11.(금) ~ 7. 12.(토)	18
	11	제주식품대전 농촌융복합산업 체험zone	9. 5.(금) ~ 9. 7.(일)	3
	12	해외판촉전 참가지원**	9. 24. ~ 26, 10. 23. ~ 26	2
	13	싱가포르 제주의 날**	11. 3.(월) ~ 11. 5.(수)	3
	14	2025 제주감귤박람회	11. 20.(목) ~ 11. 24.(월)	9
판 촉 전	15	[중앙단위] 우체국 설명절 판촉전	1. 13.(월) ~ 1. 31.(금)	14
	16	들불축제 제주당 Greenscape	3. 14.(금) ~ 3. 16.(일)	11
	17	제주마 입목 문화축제 농촌융복합산업관	4. 12.(금) ~ 4. 13.(일)	9
	18	탐나오 할인 프로모션 1차 (30)**	4. 28.(월) ~ 5. 16.(금)	29
	19	제주당 1주년 Greenscape 마켓	5. 23.(금) ~ 5. 25.(일)	5
	20	[중앙단위] 서울동행상회 지역장터	5. 29(목) ~ 5. 30.(금)	6
	21	2025 안테나숍(조천농협) 프로모션	6. 16.(월) ~	3
	22	제주당 Greenscape 마켓 6월 2주차, 럭키드로우	6. 14.(토) ~ 6. 15.(일)	6
	23	제주당 Greenscape 마켓 6월 4주차, 럭키드로우	6. 28.(토) ~ 6. 29.(일)	6
	24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7. 11.(금) ~ 7. 13.(일)	83
	25	탐나오 할인 프로모션 2차 (40)**	9. 8.(월) ~ 9. 23.(화)	16
	26	제주 로컬푸드를 만나다	9. 18.(목)	1
	27	푸파페 국내유통상담 사후관리 판촉전(제스코)*	9. 24.(수) ~ 9. 28.(일)	2
	28	푸파페 국내유통상담 사후관리 판촉전(이마트)*	11. 1.(토) ~	2
합 계				250

*제주국제박람회 사업 연계(4건), **마케팅강화사업 연계(4건)



② 지역·중앙 협업 판로 확대 지원 사업

- **목적** 대형 플랫폼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우수기업 제품을 중앙단위에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입점을 지원하여 판로 확장성 도모
- **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내용** 지원센터는 우수 제품 등을 공사에 추천 및 경영체 예산 지원, 공사는 지역에서 협의가 어려운 대형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과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프로모션 및 입점 추진
 - ⇒ **우체국쇼핑** 농촌융복합전용 브랜드관 운영 및 입점 제품 대상 시기별 할인쿠폰 발급 지원
(평월 5%, 설·명절 등 기획전 10~20%)
 - ⇒ **박람회** 메가쇼, 서울국제식품박람회 등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식품박람회 내 농촌융복합산업 기획관 운영을 통해 정책 인지도 제고
 - * 참여 수요가 높은 박람회를 중심으로 지원센터에서 해당 지역 경영체 참가 부스비 지원
- ⇒ **수도권** 서울시 등 관련기관 등과 협업으로 수도권 유동인구 밀집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직거래 장터·기획판매전 운영
 - * 수도권 외 특·광역시, 관련 기관 등과 협업해 대형 온·오프라인 기획전 운영 가능



우체국 브랜드관 평월 프모모션 이미지 (PC화면)



우체국 브랜드관 설 기획전 이미지 (모바일)



메가쇼 농촌융복합산업 특별관 조감도



메가쇼 부스 전경



④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상장 및 상금 수여를 통해 사업자의 자긍심 제고 및 지역 간 벤치마킹 유도
- 주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추후 통지) 및 수상자 대상 홍보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해 정책 인지도 확산 유도

* 2015년 ~ 2025년 전국본선대회 추진실적

연번	수상연도	시상	인증 사업자명	대표자
1	2015	은상	농업회사법인 (주)아침미소	양혜숙
2	2017	장려상	굴향영농조합법인	강훈창
3	2019	장려상	제주물마루된장학교(영)	부정선
4	2020	최우수상	제주한울(영)	홍은희
5	2021	우수상	(농)유진팡(주)	김순일
6	2022	최우수상	한라산아래첫마을(영)	강상욱
7	2023	우수상	제주샘(영)	김숙희
8	2024	최우수상	(농)(주)시트러스	김공률
9	2025	우수상	하효살롱협동조합	김미형

* 2024년 스타융복합기업 선정

연번	선정연도	인증 사업자명	대표자
1	2024	(농)(주)시트러스	김공률

⇒ **스타 기업** 격월로 민간투자·협업 등 다양한 성공 사례 기업 1개소를 선정하여 보도자료 배포,

6차산업.com게재 등 홍보(예시 : 제1호 스타 융복합 기업)

* 기업 추천(지원센터) → 심사 및 선정(농어촌공사) → 최종 선정 및 홍보(농식품부)

⇒ **센터장 회의** 센터별 사업 실적 및 계획 공유를 위해 분기별 1회 실시, 각종 현안 발생 시 간담회 등 개최

⇒ **인증제도 관리** 신규·갱신·예비인증 최종 심사, 간담회 등



⑤ 온라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정보 접근 편의성 제고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6차산업.com, 성과관리시스템, BPMS) 운영
- **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국비 100%)
- **주요 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이용자(경영체, 소비자) 맞춤형 정보 제공 및 홍보, 성과관리시스템
현행화 및 유지 보수 등
 - ⇒ **6차산업.com** (예비)인증경영체를 위한 정책 안내 및 지역별·특징별 인증제품 소개 등
대국민 정책 홍보를 위한 누리집 운영
 - ⇒ **홍보** 온라인 채널(SNS 등)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정책 및 제품, 체험, 시설 등을
홍보하여 대국민 인지도 제고 유도

⑥ 자금(융자)지원 * 세부시행지침은 별도 수립·배포 완료('25.9.)

- **목적**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
- **지원 대상**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융복합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 및 초기 창업기업
- **지원형태 및 지원 한도**
 - ⇒ **시행주체 및 지원형태** 시장·군수·구청장/융자 100%(이차보전)
 -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 **대출조건 및 한도액**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시설 및 리모델링 자금(최대 20억원)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최대 3억원) : 2년 거치 3년 상환
 - ⇒ **지원 절차** 신청(농업인 → 지자체) → 심사(지자체, 농협은행) → 대출(농협은행 → 농업인)





7 농촌융복합산업 포장재비 제작 지원사업

● 목적

-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사업자들의 포장박스 제작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 완화 및 환경 개선 선도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브랜드 홍보 효과 창출

● 주요 내용

- 차별화된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포장박스 등) 제작 지원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및 제주 농촌융복합산업 홍보 관련 포장재 등 지원(11개소)
 -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업체 중 6차산업 인증사업체('25.1월기준) : 총 15개소
→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포장재비 제작지원: 1개소 지원완료(중복지원업체 제외)

연번	23년 지원업체(8개소)*	24년 지원업체(10개소)	25년 지원업체(1개소)
1	농업회사법인(주)아침미소	제주시산림조합임산물유통센터	농업회사법인 (주) 제주양조장
2	서귀포시산림조합 임산물유통센터	한라산식품	
3	하효살롱 협동조합	담은제주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4	농업회사법인(주)큰행복	청정제주녹차영농조합법인	
5	메밀밭에가시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시트러스	
6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	제주샘영농조합법인	
7	농업회사법인(주)제주클린산업	이맘주식회사	
8	(주)청원	제주웰빙영농조합	
9		농업회사법인 (주)갈중이	
10		마크로비오틱올리브	

● 2025년 추진실적

- 고향사랑기부제 포장재 제작 지원(1개소)



제주양조장1950 카톤 405*305*135			
나♥도 제주도			
1950	제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주)제주양조장 TEL. 064-782-1950 FAX. 064-783-07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소길 2064	1950	제주양조장 농업회사법인(주)제주양조장 TEL. 064-782-1950 FAX. 064-783-07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소길 2064

제주양조장1950 카톤박스 / 405×305×135 사이즈



⑧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마케팅 강화사업(온라인)

- **목적** 온라인(탐나오 등)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강화 사업
- **주요 내용** SNS 바이럴 마케팅 및 할인 프로모션 등 진행

→ **온라인 할인 프로모션** 온라인 안테나숍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입점 전체 (예비)인증경영체 대상으로 '명절 기획전' 및 '농촌융복합산업 세일페스타(농세페)' 등 할인 프로모션 진행 * 탐나오 「제주 농부의 장」 신규 입점 계속 추진하며 할인쿠폰비 사업비에서 지원

이벤트 가정의 달 맞이 농.세.페 농·특산물 세일 페스타 6차산업 제품 30% 할인

6차산업 제품 30% 할인

이벤트

2025. 4. 28. ~ 5. 16. (예산 소진시 마감)

60,000 45,000

coupon 30,000 15,000 3,000

6차산업 인증사업자 농협축산식품부

차산업제품 30% 즉시 할인

차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의 2차산업과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 3차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농기기자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6차산업 제품에는 6차산업 인증마크가 부여됩니다. 정부가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통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추석맞이 농.세.페 제주 농·특산물 추석맞이 40% 할인

추석맞이 40% 할인

제주농부의 장 (6차 산업) 카테고리

2025. 9. 8. ~ 10. 9. (예산 소진시 마감)

과일, 가공식품 등 인기 추석선물을 40% 쿠폰 할인으로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보세요

제주농부의 장 탐나오 쿠폰팩

총 20만원 쿠폰팩으로 추석선물 준비 끝!

80,000 60,000

40,000 20,000 4,000

20만원 이상 구매시 15만원 이상 구매시 10만원 이상 구매시 5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 이상 구매시

* 본 이벤트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강화사업'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농.세.페 프로모션 홍보 카드뉴스



→ SNS 마케팅

- 인스타그램 제품 체험단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진행
* 인스타그램 및 블로그 인플루언서 모집 후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예비 잠재고객 확보 및 실질적인 후기 작성으로 제품 마케팅 강화
- 인증사업자 5개소 참여, 인스타그램 50건(업체당 10건) 바이럴 마케팅 진행
- 속품 기획 컨텐츠 5건 제작 및 홍보 *경영체별 1건 속츠 컨텐츠 제작 및 광고



2025년도 인스타그램 / 네이버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 속츠 컨텐츠 제작 결과





⑨ 제주6차산업협회

- **목적** 제주 지역의 '농촌융복합인증사업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로 다양한 사업과 지원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함

- **연혁**

연번	시기	내용	비고
1	2016. 3. 29	창립총회	
2	2017. 7. 20	사)제주6차산업협회 설립	
3	2016년 ~ 2018년	1기 회장단 운영	이성철
4	2019년 ~ 2021년	2기 회장단 운영	이기승
5	2022년 ~ 2024년	3기 회장단 운영	성주엽
6	2025년 ~ 현재	4기 회장단 운영	(연임)성주엽

- **가입대상** (가입시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사업자 해당없음)

- **가입 방법** 가입비 100,000원, 연회비 200,000원

☞문의 : (문의전화번호) jeju6th.office@gmail.com, 제주6차산업협회.com

- **주요 사업내용**

⇒ **선진지 견학**

- 협회 회원 대상, 타지역(도외) 우수 인증사업자(협회) 견학지원

⇒ **홍보 및 판매**

- 타사업·타지역 대상, 제주6차산업 협회 회원사 홍보
- 6차산업협회 플리마켓 개최

⇒ **지원사업 참여추천 등**

- 우수사례경진대회, 우수스타기업 등 추천
- 순회역량강화교육 등 인증사업자 협회 회원사 추천

⇒ **협회 정기총회**

- 협회 정기총회 운영
-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성과·계획 설명회 등 연계



● 2025년 운영실적

→ 제주6차산업협회 해외홍보 및 마케팅

- 참여기간 : 2025. 11. 19.(수)~9. 22.(토)
- 장소 : 필리핀 마닐라(BGC, Intramuros, Mitsukoshi Mall 등)
- 판촉행사 : 22개사 81개 상품, 인증사업체 24개소 수출개척단 판촉홍보 진행
- 내용 : WWL Group 본사 및 물류창고 방문 및 PhilKorec 경제단체 mou체결 등 수출상담회 진행



필리핀 해외홍보마케팅 행사

→ 제주6차산업협회 정기총회 및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설명회 연계

- 일시 : 2025년 3월 11일(화) 10:00~14:00
- 장소 : 메종글래드제주
- 참석자 : (예비)인증사업자 및 도내 관련 기관 등 총 86명 참여



2025년 제주6차산업협회 정기총회 (25. 3. 11) / 제주농촌융복합산업 24년 사업성과 및 25년 사업 설명회



⑩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푸파페제주)

- **목적** 제주 농촌융복합산업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고 고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기회의 장 마련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25. 7. 11.(금) ~ 7. 13.(일) 3일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관** : (사)제주농업농촌진흥원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 **공식행사** : 개막식 및 문화행사
 - **전시행사** : 도내·외 기업 전시 및 유관기관 홍보, 주제관 기획 전시
 - **국제포럼** : 농촌융복합산업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 **상담회** : 해외 수출상담회, 국내유통 상담회 및 품평회, 인증·코칭 상담, 상담회 사전·사후 관리 등
 - **부대행사** : 사전 집객 이벤트, 현장 경품 이벤트, 농촌융복합산업 체험 프로그램, 휴식 공간 조성
 - **홍보** : 도내 언론사 및 SNS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전개



2025년 제7회 농촌융복합산업 제주국제박람회 주요 현장 스케치



III. 기타자료(인증신청 관련 서류 등)



(기준유형)2026 예비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연번	<2026 예비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체크>
1	인증신청서 + 신규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주체 증빙을 위한 서류) 해당 대상주체에 한함 (택 1)		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산물품질관리원)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5	(2025년, 2024년, 2023년)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겸업사업자 수입증명/면세사업자수입증명 등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통장내역X, 농협거래내역서X 등) 단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장과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 합산 인정		
6	★농업·제조·가공·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정관 또는 조작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2025년) (자가생산 증명을 위한) 자가생산증명서 +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사진 등		
8	(2025년) (계약재배 증명을 위한)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 + 농업인경영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내역확인서 등		
9	(2025년) (매입증명을 위한) 매입증명서 + 농업인경영체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 내역확인서 등		
10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정규 근로자 확인을 위한) ①, ② 모두 증빙준비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날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 25년, 24년		
11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임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임시근로자 근로확인서(총괄/월간-서식 참조)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12	(3년간, 2026년~2028년 사업 경영 및 운영 확보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13	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빙서류 등 - 최근 3년(2026년, 2025년, 2024년) • (정량평가)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 예비인증의 경우, 별도 기점은 없음		
14	심사를 위한 자부담 이체증빙서(이체내역서 등) 자부담금 200,000원 (반드시 업체명으로 이체) (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가입)		해당 없음
1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유통현황 자료(붙임18~20)		
16	그 밖의 기타서류 (언론보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		

연번	<2026 신규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
1	인증신청서 + 신규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주체 증빙을 위한 서류) 해당 대상주체에 함 (택 1)	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경제체 증명서 (농산물품질관리원)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5	(2025년, 2024년, 2023년)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겸업사업자 수입증명/면세사업자수입증명 등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통장내역X, 농협거래내역서X 등) 단 사업장이 아닌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장과 미출액 합산인정		
6	★농업·제조·기공·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정관 또는 조작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2025년) (자가생산 증명을 위한) 자가생산증명서 + 농업인경업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사진 등		
8	(2025년) (계약재배 증명을 위한) 계약재배약정서 또는 계약서 + 농업인경업체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내역확인서 등		
9	(2025년) (매입증명을 위한) 매입증명서 + 농업인경업체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 거래 내역확인서 등		
10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정규 근로자 확인을 위한) ①, ② 모두 증빙준비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날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 25년, 24년		
11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임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임시근로자 근로확인서(총괄/월간-서식 참조)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12	(3년간, 2026년~2028년 사업 경영 및 운영 확보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함)		
13	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빙서류 등 - 최근 3년(2026년, 2025년, 2024년)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input type="checkbox"/> (가점2) 예비인증사업자 (현재 예비인증사업자에게만 해당)(예비신청시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가점2)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가점1) 신상품 개발(상품개발 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 또는 특허출원(특허증 등) <input type="checkbox"/> (가점3) 최근 2년간 중기부 사업 ①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 ③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④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중 1개 사 업자 선정(소상공인 24(www.sbiz24.kr)에서 확인서 출력)		
14	심사를 위한 자부담 이체증빙서(이체내역서 등) 자부담금 200,000원 (반드시 업체명으로 이체) (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기입)		
1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유통현황 자료(붙임18~20)		
16	그 밖의 기타서류 (언론보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		

연번	<농촌융복합산업 ⁺ 2026 인증 신청을 위한 준비서류 리스트>		<체크>
1	인증신청서 + 신규 사업계획서 1부		
2	(대상주체 증빙을 위한 서류) 해당 대상주체에 한함 (택 1)	① 농업법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 농업경제체 증명서 (농산물품질관리원) ② 농업 관련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③ 농업 관련 중소기업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④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인증서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인증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⑥ 1인창조기업 → k-startup 접속 후 확인작성 및 진단서 캡쳐	
3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5	(2025년, 2024년, 2023년)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 및 사업성과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명세서/겸업사업자 수입증명/면세사업자수입증명 등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신고된 자료만 인정. 통장내역X, 농협거래내역서X 등) 단 사업장이 0원이거나 경우 동일한 대표자에 주 사업장과 연계한 사업장과 미출액 합산인정		
6	★신설유형에 부합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 관련 내용 명시 필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7	(2025년) 실적 증빙자료		
8	신설유형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자격·실적 등)		
9	단, 예비의 경우 아래의 13.(가점) 및 14.자부담입금 해당사항 없음		
10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정규 근로자 확인을 위한) ①, ② 모두 증빙준비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최근날짜) ②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 25년, 24년		
11	(사업계획서 작성일 날짜 기준) (임시 근로자 확인을 위한) 임시근로자 근로확인서(총괄/월간-서식 참조)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12	(3년간, 2025년~2027년 사업 경영 및 운영 확보 확인)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 해당자에 한함)		
13	사업계획서 내 특이사항 증빙서류 등 - 최근 3년(2026년, 2025년, 2024년) <input type="checkbox"/> (정량평가) 교육이수증(중앙·지자체 주관 및 위탁교육 이수증, 수료증 등) <input type="checkbox"/> (가점2) 신청 사업자 대표 또는 고용인원 50% 이상의 나이(40세 미만) <input type="checkbox"/> (가점2) 신상품 개발(상품개발 증명서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등) 또는 특허출원(특허증 등) <input type="checkbox"/> (가점3)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입상 실적(최근3년, 상장사본 등) <input type="checkbox"/> (가점3) 최근 2년간 중기부 사업 ①신사업창업사관학교, ②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로컬 브랜드 창출, ③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④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 사업 중 1개 사업자 선정(소상공인 24(www.sbiz24.kr)에서 확인서 출력)		
14	심사를 위한 자부담 이체증빙서(이체내역서 등) 자부담금 200,000원 (반드시 업체명으로 이체) (ex, 농업회사법인 ABC 일 경우, ABC로 기입)		
15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유통현황 자료(붙임18~20)		
16	그 밖의 기타서류 (언론보도 등 객관적 증빙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4.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주원료 증빙자료 등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 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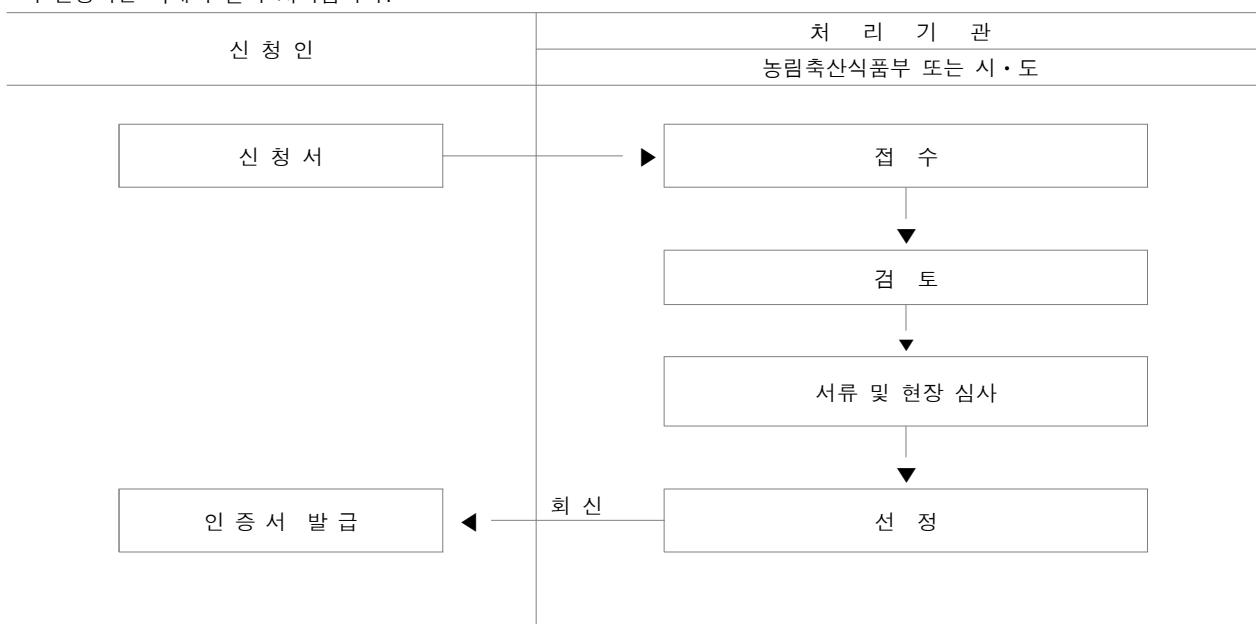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 의 서류는 변경 사항 있는 경우 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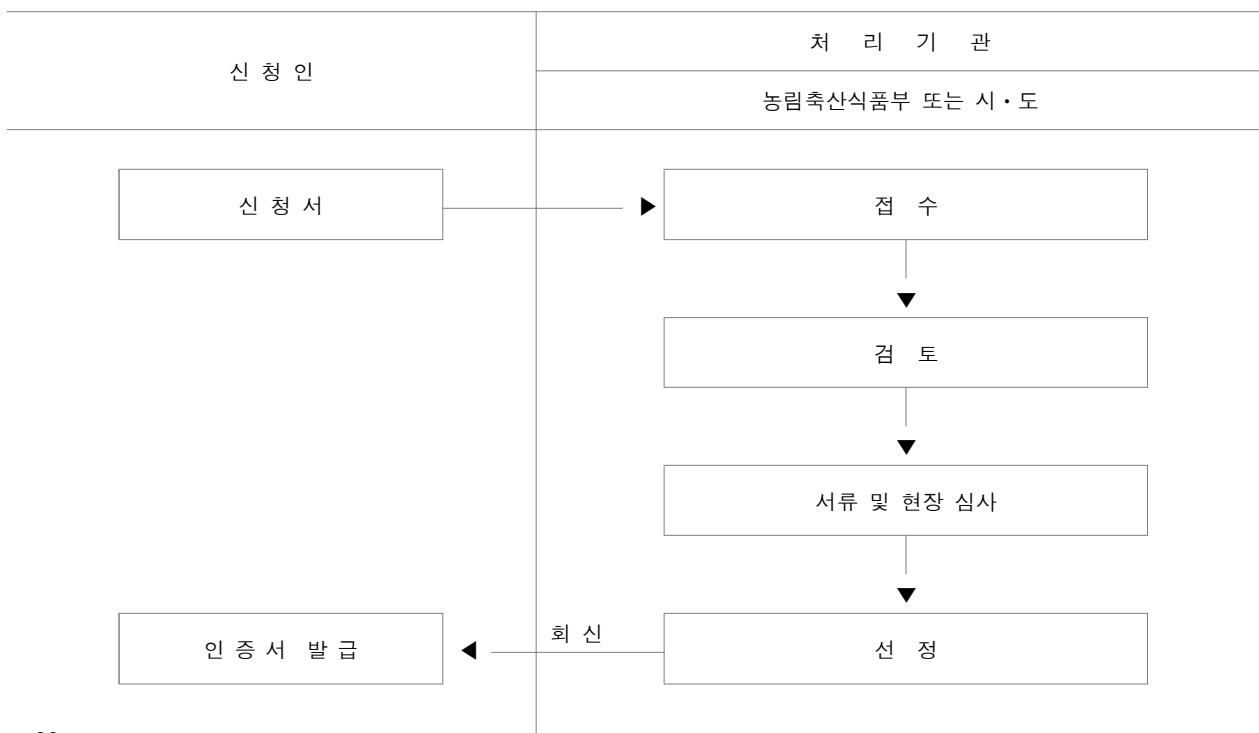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계획서(신규)

I. 추진 사업의 명칭 :

II.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원료			주생산품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매출액: 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 ■ 고용 현황: 총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종사자: 명(상시1): 명, 임시2):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해당부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농장면적 : m²(전 담)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 m²(전 담) 			
	2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면적 : m²(대지 건물) 시설면적 : 체험 m², 음식점 m², 숙박 m², 직매장 m², 기타 m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 명 			
특이사항3)					

1)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2)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인원으로 환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3)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간의 흐름 순으로 기재

III.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 [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26년, 25년, 24년)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IV.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 [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 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p>사업의 개요, 기본 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 · 2차 · 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 · 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p>
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p>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 · 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p>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지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 · 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2차 가공, 3차 체험 · 서비스에 사용되는 1차 농산물의 확보 현황 및 향후 3년간 계획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 전년 기준						
품 목	총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	%	%	%
			톤	톤	톤	톤
			%	%	%	%
톤	톤	톤	톤			
%	%	%	%			
* 지역: 사업장(경영체)이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 · 도)를 의미하며,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접해 있는 시 · 군(기초지방자치단체)을 포함						

<향후 확보 계획> ※ 향후 3년간 연평균

* 해당 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 총 예상 사용량의 평균량을 기준으로 작성

품 목	연평균 소요량 (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매입(농협 등)	
			지역내 농가	지역외 농가	지역내	지역외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톤	톤	톤	톤	톤
		%	%	%	%	%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기 타	
-----	--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 관련 서류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v] 1×2×3차형(복합형) (농촌융복합산업 ⁺)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사업계획	<붙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예비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4. 법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주원료 증빙자료 등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 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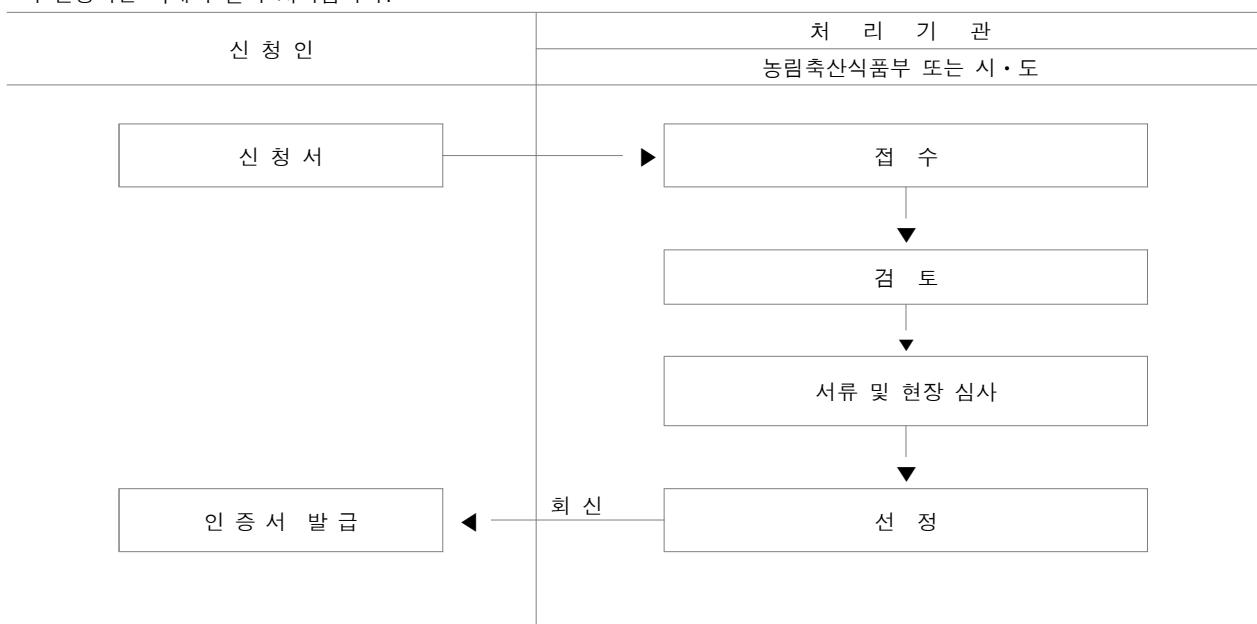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8.>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신규·갱신)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신청단위 []농업인, []개인·법인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법인인 경우)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유형구분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v] 1×2×3차형(복합형) (농촌융복합산업+) 구분 [] 최초 인증 신청, [] 갱신(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계획	<불임>으로 작성하여 별도 첨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 갱신의 경우, 사업계획서 외 의 서류는 변경 사항 있는 경우 만 제출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증명서 1부(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인 경우)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법인 아닌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2. 사업자등록증(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을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에 제공하며, 제공받은 기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대표자 성명을 6차산업 홈페이지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기간(3년) 동안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의 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심사 및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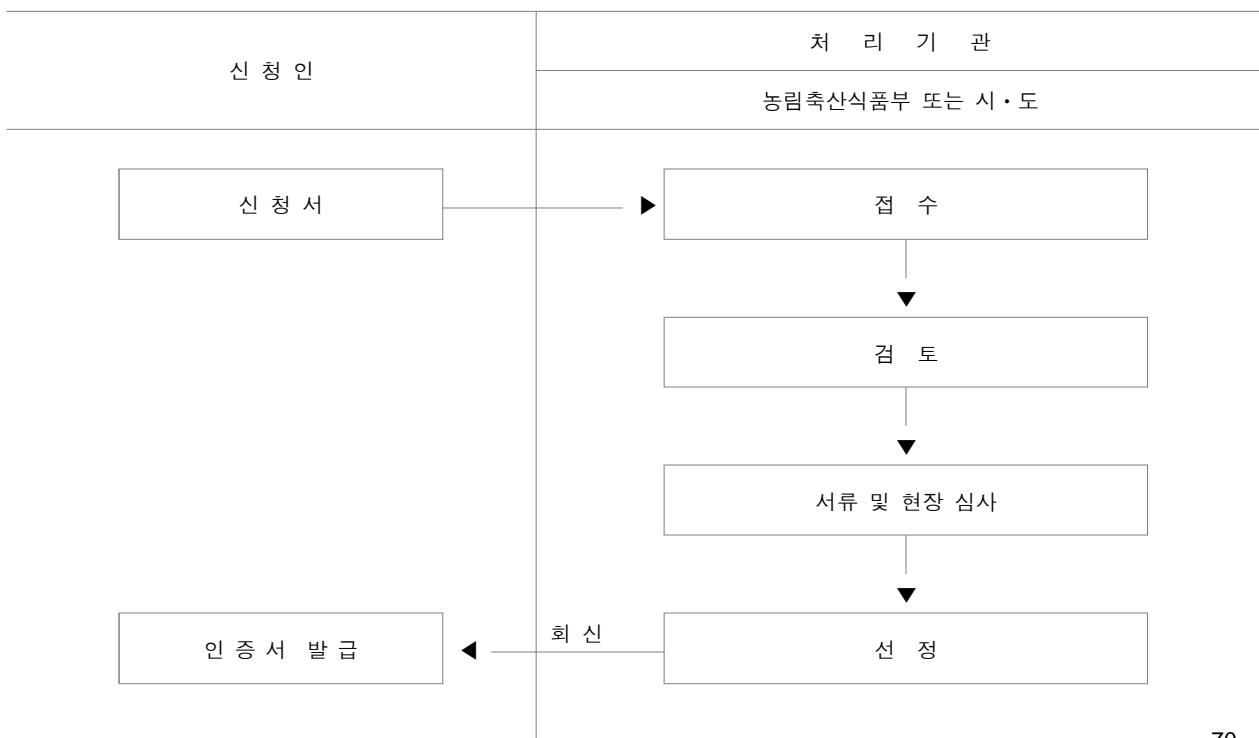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작성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 글자는 검은색으로 쓰고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의 유형에 따라 농업인, 개인·법인 사업자, 영농조합, 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기타로 구분하여 √ 표시합니다.
- 주소란에는 신청인 또는 법인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 유형은 제조·가공 중심인 경우 1×2차형(가공형), 체험·관광 및 직거래 유통 중심인 경우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제조·가공, 체험·관광, 직거래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1×2×3차형(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사업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신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갱신)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업계획서(신규)

I. 추진 사업의 명칭 :

II. 사업자 일반 현황(작성일 기준:)

성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일	
연락처			
주소			
업종		자본금	백만원
주원료		주생산품	
매출액 및 고용 현황 *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매출액: 백만원 * 농산물 생산(1차): , 농산물 가공(2차): , 농촌 체험·관광(3차)(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매출) : ■ 고용 현황: 총 명 * 유급종사자: 명(상시⁴⁾: 명, 임시⁵⁾: 명) 무급종사자: 명(가족: 명, 기타: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 해당부분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사업장 현황	1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농장면적 : m²(전 답)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농장면적 : m²(전 답) * <input type="checkbox"/> 자가생산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 <input type="checkbox"/>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m²(하우스 축사 기타) 	
	2 차	공장면적 : m ² (대지 건물)	
	3 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면적 : 체험 m², 음식점 m², 숙박 m², 직매장 m², 기타 m² 연간(전년도) 방문객수(체험객수) : 명 	
특이사항 ⁶⁾			

4) 상시글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글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5)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예시) 10명을 5개월간 월 10일, 일 5시간씩 고용한 경우 연간 근무시간은 2,500시간(10명×5개월×10일/월×5시간/일=2,500시간)
이위으로 확산 시 13명(2,500시간/1,920시간=1.3명)

6) 이 : 혀가 정부지월 사항 등을 시간의 흐름 속으로 기재

III.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역량 [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기본역량]

①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교육 참가실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26년, 25년, 24년)

교육명	년/월	장소	주최(주관)기관	참고

②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격증·인증 취득 현황

자격증/인증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③ 농산물 가공·체험·요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신상품개발 증명서, 특허출원 실적

증명서/특허명	발급 년/월	발급기관	참고

④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품평회·박람회 등 수상실적(도단위 이상)(최근 3년간, 신청년도 포함)

행사명	수상등급	주최(주관)기관	참고

IV.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실적 [사업자(사업주)의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추진 실적]

① 매출·수출 실적(가공, 체험, 서비스의 재료로 사용되는 농산물 포함)

구 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	비고(수출국별 수출액)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② 고용 현황

(단위: 명)

구 분	총 고용인원	유급종사자		무급종사자	
		상시근로자*	임시근로자**	가족	기타
2025년(인증신청 전년도)					
2024년(인증신청 전전년도)					

* 상시근로자: 1년 이상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대표자 및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계약직을 포함합니다)

** 임시 근로자 인원 산출 방법: 연간 근무시간 누계 1,920시간(12개월×20일/월×8시간/일)을 1명으로 계산

V. 사업의 개요 및 세부계획(향후 3년간)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계획	①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②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의 개요, 기본방향 및 체계, 융복합 형태	<p>사업의 개요, 기본 방향, 추진체계, 농촌융복합산업 형태 기술: 1차 · 2차 · 3차 산업 간 연계 형태, 2차 · 3차 산업과 1차 산업과의 관계, 부가가치 제고 방식</p>
2. 향후 3년간 세부 추진계획	<p>신상품 개발, 제품의 구체적인 판로 확보방안(직매장 활용, 온라인 판매, 체험객 유치 등), 고객 확보 노하우, 홍보 · 마케팅 계획을 통한 매출 증대 등 계획의 독자성, 창의성,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기술, 추진사업의 실시 예정 시기 및 기간 포함</p>

**지역농업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② 지역 내 농촌융복합산업 자원과의 연계성

1.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방식

지역주민 고용 계획,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활동(장학금, 마을잔치 등) 계획 등에 대해 기술

2. 지역 내 관광자원,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 활용 · 연계 방안

지역 내 종합가공센터 활용, 체험농가와의 연계, 체험마을의 숙박시설 활용 등에 대해 기술

**농산물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 관련 증빙자료

<향후 확보 계획> 농촌융복합산업+ : 관련 증빙자료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기 타

기타 특이사항 자유 기술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신업 기반 (40)	1.사업체의 역량 (30)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초 역량 (10)	1-1. 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횟수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10	10	8	6	4	2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10)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2. 지역농산 물 사용정도 (10)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0)	1-3.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10)	2.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전년도 기준)	비율 (%)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10	10	8	6	4	2		
경쟁력 (20)	3.창의성 및 활용성(20)	창의성, 경쟁력 (10)	3-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10	8	6	4	2	
		지역 내 지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3-2.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의 연계 및 활용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20)	4.지역과의 연계성(20)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10)	4-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계획	10	10	8	6	4	2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10)	4-2.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5 . 계획의 타당성 (20)	계획수립의 적 절정(10)	5-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5-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6.가점 (8)		• (신규) 예비인증(2), 청년(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대표자 또는 고용인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 • (갱신) 사회공헌(2), 자연친화적 경영(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1)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8	_ 점						
합 계				105	점					
심사 의견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사업 기반 (40)	1. 사업체의 역량 (30)	농촌융복합사업 관련 기초 역량 (10)	1-1. 사업주(경영주)의 3년간(신청년도 포함) 관련 교육 참가	횟수	4회 이상	3회	2회	1회	0회
			10	10	8	6	4	2	
		경영 및 재무 관리 실태(10)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 제표 작성 여부)	10	10	8	6	4	2
	2. 지역농산 물 사용정도 (10)	농촌융복합사업 인프라구축(10)	1-3. 가공시설, 체험장, 직매장 등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0	10	8	6	4	2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10)	2. 원물의 지역농산물 사용 정도 (전년도 기준)	비율 (%)	70% 이상	65% 이상	60% 이상	55% 이상	50% 이상
			10	10	8	6	4	2	
경쟁력 (20)	3. 창의성 및 활용성(20)	창의성, 경쟁력 (10)	3-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혁신성, 차별성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3-2. 지역 내 관광자원, 산업시설(직매장, 가공시설, 체험장 등)의 연계 및 활용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20)	4. 지역과의 연계성(20)	지역 농업과의 연계성(10)	4-1. 지역농업 활성화 기여 계획	10	10	8	6	4	2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10)	4-2.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계획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5. 계획의 타당성 (20)	계획수립의 적 절정(10)	5-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 (투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5-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복합성	10	10	8	6	4	2
합 계				105	점				
심사 의견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30)	1. 사업체의 역량 (30)	경영 및 재무 관리(15)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 제표 작성 여부)	15	15	12	9	6	3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5)	1-2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15	12	9	6	3				
경쟁력 (20)	2 창의성 및 활용성(20)	창의성, 경쟁력 (10)	2-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 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 도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2-2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 제품 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 과의 연계 및 활용도, 확장성, 고 품질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30)	3. 지역과의 연계성(30)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10)	3-1.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 직)와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20	20	15	10	5	0				
		지역주민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10)	3-2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지역주민 고용 등 농가수익 기여도(10)	3-3.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익 향상, 농가 수 익 기여 등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4. 계획의 타당성 (20)	계획수립의 적 절정(10)	4-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 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4-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 복합성	10	10	8	6	4	2				
5. 가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청년(2), 최근 3년 신상품 개발 및 특허출원(2), 창업 관련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대회 입상 실적 (3) * 대표자 또는 고용인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 • (타부처 연계) 최근 3년 내 중기부 창업 관련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3) 			10	_ 점							
합 계				110	점								
심사 의견													

접수번호		신청업체	
심사일자	20 . .	심사위원	(서명)

구분	심사항목	세부지표	심사내용	배점	심사점수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농촌 융복합 산업 기반 (30)	1. 사업체의 역량 (30)	경영 및 재무 관리(15)	1-2 최근 2년 간(신청년도 포함) 재무관리, 회계자료 작성의 성실도 (재무회계 관리, 손익계산서, 재무 제표 작성 여부)	15	15	12	9	6	3
		농촌융복합산업 인프라구축(15)	1-2 농촌지역 내 관련 시설 구축 및 관리 정도	15	15	12	9	6	3
경쟁력 (20)	2 창의성 및 활용성(20)	창의성, 경쟁력 (10)	2-1. 사업계획서의 독자성, 독창 성, 혁신성, 차별성, 및 수익성 정 도	10	10	8	6	4	2
		지역 내 자원과의 연계 및 활용 (10)	2-2 지역 내 관광자원 및 시설 제품 서비스와 지역 역사·문화 등 과의 연계 및 활용도, 확장성, 고 품질 정도	10	10	8	6	4	2
지역 사회 연계· 상생 (30)	3. 지역과의 연계성(30)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10)	3-1. 지역 공동체(주민, 단체, 조 직)와의 연계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	20	20	15	10	5	0
		지역주민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10)	3-2 지역주민 수용성, 참여도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의 지속 가능 정도						
		지역주민 고용 등 농가수익 기여도(10)	3-3. 지역주민 고용 등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수익 환원, 농가 수 익 기여 등	10	10	8	6	4	2
향후 계획 (20)	4. 계획의 타당성 (20)	계획수립의 적 절정(10)	4-1. 계획 수립 내용의 적절성(투 융자계획 등)과 계획 목표의 달성 가능성	10	10	8	6	4	2
		완성도(10)	4-2 1차, 2차, 3차 산업 간의 융 복합성	10	10	8	6	4	2
합 계				110	점				
심사 의견									

자가생산 증명서(25년도)

생산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인)

작물명	재배지 주소	재배 기간 (25년1월~25년12월)	수량 (톤, t)	비고

* 자가 생산 작물별 수확 직전 사진 첨부

농산물 계약재배 협약서

농산물의 매수인(수급자)_____ (이하 “수급자”라 한다)와(과) 매도인(공급자)_____ (이하 “공급자”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이 계약재배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작물재배)

작물명 (품목)	재배지 주소	재배 면적 (m ²)	계약 물량 (kg)	계약액 (원)

- “공급자”는 상기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급자”에게 매도하고 “수급자”는 이를 매수한다.
- 본 계약재배협약에 의한 농작물 식재에 필요한 종자, 농기구 등 구입은 “수급자”와 “공급자”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제2조(규격 및 단가)

- 계약대상 농작물의 규격, 단가 및 포장 단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품목	품종	규격	수매 단가 (원/kg)	포장 단위

- 1항의 수매단가는 출하시점에 산지 시세와 농작물의 품질, 규격 등을 감안,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유효하며 “수급자”와 “공급자”는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 및 대금지급)

- 계약금은 상호 합의 하에 “수급자”가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 잔금은 제1조의 수량이 완납된 후 30일 이내 “수급자”는 “공급자”에게 지급한다.

1. “공급자”는 “수급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농산물을 인도한다.
2. “수급자”는 “공급자”의 농산물을 검수한 후 인수하고 거래명세표를 교부한다.
3. 농산물 인수 후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및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7조(관할법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급자”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수급자”와 “공급자”的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매수인(수급자) 상호 :

성명 : (인)

주소 :

매도인(공급자)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소규모 매입 증명서(25년도)

매입자	업체명		주소	
	대표자 성명	(인)		
매도자	상호명		주소	
	성명	(인)		

[앞면]

국산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생산 연도	품목	원산지	판매 수량 (kg)	생산자(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소 ·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산자 또는 판매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공급 받는 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	

상기 품목의 원산지와 생산자를 증명하여 공급 받는 자에게 판매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판매자)

(인 또는 서명)

※ 이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농산물의 생산·유통자 등이 필요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작성 요령 뒷면 참조>

[뒷면]

작 성 요 령

- ① 생산연도 : 판매하는 농산물의 생산연도를 기재
- ② 품목 : 판매하는 농산물의 품목명을 기재
- ③ 원산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생산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
- ④ 판매수량 : 해당 농산물의 판매 수량을 기재
- ⑤ 생산자(성명) :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발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자의 성명을 기재
- ⑥ 생산자(주소·연락처) :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발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 농업인의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
- ⑦ 농업경영체등록번호 : 생산 농업인 또는 유통업체가 발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생산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기재
- ⑧ 생산자 또는 판매자 : 판매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
- ⑨ 공급받는 자 : 공급받는 업체의 정보를 기재

※ 주의사항

유통업체가 발행하는 농산물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생산자(농업인)가 발행한 ‘농산물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유통업자가 임의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됨.

ABCD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일 : 2022.3.2.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본 회사의 명칭은 ABCD(이하, “본 회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체험, 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영농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본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생산, 계약재배, 매입 및 가공, 체험,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 제주 농산물(hijk, lmno 등)을 활용한 EDFG 제품 연구 및 생산
- 제주 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매입 및 가공, 체험, 판매
- ABCD 매장 운영(체험, 판매 등)
- 제주 HIJK 체험프로그램 및 교육 등
- EDFG 제품 생산 및 유통 판매
- 기타 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과 운영

제4조(조직) 본 회사의 운영을 위해 대표자와 생산, 기획, 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등 담당직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에 기타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표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22.3.2.)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조직 및 조직 대표자 000 (인)

원물(1차산업)·가공제품(2차산업) 현황

- ※ 필요시 서식 복사하여 사용
- ※ 1차 원물일 경우에는 사진, 원물명 기입

제품사진	제품명(규격, 가격, 주원료, 원산지) ※ 제품 뒷면 표기내용 작성

유통·판매 현황 유통부문 신청 시 작성(직매장 포함)

체험·서비스(3차산업) 현황

체험·서비스 부문 신청 시 작성(음식메뉴 포함)

연번	체험프로그램명	내용/구성/가격	체험인원(명)
			24년도